

#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 최경진 · 조영기 · 김정혜

입법평가 연구 11-17-⑪

#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현수 · 최경진 · 조영기 · 김정혜



#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Ex Ante Evaluation of Legislation: Digital Assets after Death*

연구자 :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Hyun-Soo

최경진(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Choi, Kyoung-Jin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Cho, Young-Ki

김정혜(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Kim, Jeong-Hye

2011. 11. 30.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의 일상생활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3개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 시안을 마련하였음

####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 시안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디지털유산 법제에 있어 입법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전평가의 구체적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디지털유산 법제의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 디지털유산의 현황 및 현행법제

- 디지털유산은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취급에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 다양성, 혼합성,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의 증대 등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
- 현행법하에서 디지털유산은 상당부분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하여 법적 처리가 가능하지만, 디지털유산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 입법으로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및 법제 기본방향

-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기본적 방향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유산의 범위, ‘제3자’의 범위,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입법적 해결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디지털유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 III. 기대효과

- 디지털유산과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의 개별법 및 상속법제하에서의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해석론 제시
- 향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제 개정시 디지털유산 법제의 방향성 제시

▶ 주제어 : 디지털유산, 온라인자산, 상속, 개인정보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s**

#### **Background**

- A recent substantial surge in the use of web-based services in multiple aspects of daily and personal activities is giving rise to questions regarding the legal treatment of various digital assets after death, thereby calling for further studies and discussions.
- In efforts to address some of the legal challenges of managing a person's digital assets after death, three legislative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existing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ave been submitted to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also prepared a working draft for legal framework.

#### **Purposes**

- This research intends to help establish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n digital assets after death by implementing ex ante evaluation on the proposal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CC's working draft.

- It also seeks to authenticate the feasibility of the enclosed assessment with expert surveys, and provide detailed considerations for the design of legislations on digital assets after death.

## II. Main Contents

- Where We Stand: Digital Assets and Current Legislations
  - As digital assets exist in a variety of forms and categories, careful and well-informed considerations must be given to the diverse and hybrid nature of digital assets and their contents as well as the increasing rol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n designing effective legislations.
  - While the current succession provisions of Civil Law are applicable to digital assets after death, further legislative clarity and demystification is required on the treatment of the assets considering their unique properties.
- Review of Proposals and Suggestions for Future Framework
  - In essence, the proposals and working draft are concurrently designed to alleviate legal responsibilitie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 However, multiple discrepancies were observed with regard to the scope and range of digital assets, the definition of “third party,” and how to implement legal formalities and procedures relating to the legacies among others.

- Considering the unique properties of digital assets, it is advisable that forthcoming legislations on digital assets provide key principles and outlines while delegating some of the procedural requirements and responsibilities to self-regulatory regimes.

### **III. Implications**

- The research will help identify some of the key hurdles and limitations of current legislations, and assist in interpreting the matters surrounding digital assets within the context of succession provisions and regulations in existence.
- It will also provide directional suggestions on how to incorporate the concept of digital assets in designing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Key Words : digital assets after death, online assets, succession, personal information

# 목 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입법평가의 개요 .....	15
제 1 절 평가의 필요성 및 대상 .....	15
제 2 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	15
제 2 장 국내외 디지털유산의 현황 .....	17
제 1 절 국외 현황 .....	18
1. 해외 사례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정책 현황 .....	18
2. 디지털유산 관련 법제 .....	23
제 2 절 국내 사례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정책 현황 .....	24
제 3 장 디지털유산의 개념 및 현행법제 .....	29
제 1 절 디지털유산의 의의와 특징 .....	29
1. 디지털유산의 의의 .....	29
2. 디지털유산의 범위 .....	30
3. 온라인유산의 특징 .....	32
제 2 절 현행법제에서의 디지털유산 .....	33
1. 디지털유산의 법적 성질 .....	33
2. 온라인유산의 상속 여부 .....	40

제 3 절 소 결 .....	46
제 4 장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	49
제 1 절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고려사항 .....	49
제 2 절 국회 입법안 검토 .....	52
1. 개정법안의 내용 .....	52
2.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 .....	54
3. 개정 입법안의 검토 .....	58
제 3 절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시안 및 가이드라인(안) 분석 .....	64
1. 법률시안 .....	65
2. 권고안 .....	67
제 4 절 소 결 .....	70
제 5 장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73
제 1 절 조사개요 .....	73
제 2 절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	76
제 3 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78
1. 디지털유산의 범위 .....	78
2. ‘제3자’의 범위 .....	85
3.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 .....	90
4. 이용자의 사전조치의 종류 .....	94
5. ‘제3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처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97
6.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율 방식 .....	100
7.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	114

제 4 절 소 결 .....	117
제 6 장 결 론 .....	123
참 고 문 헌 .....	127

## 【부 록】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의원 대표발의) ..... 13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의원 대표발의) ..... 137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 141
4.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지털유산 처리기준에 관한 권고안 ... 145
5.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 151

## 제 1 장 입법평가의 개요

### 제 1 절 평가의 필요성 및 대상

종래 유형적 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법제가 정비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기존의 상속법제의 규율범위를 벗어나는 사후 디지털 정보의 법적 취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있으나 소위 “디지털유산”<sup>1)</sup>에 관한 법제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문제는 민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법해석적 접근과 함께, 디지털유산에 대한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국회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처리 및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중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디지털유산에 취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유산에 관한 현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디지털유산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처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 연구의 필요성, 목적, 범위 및 연구의 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에 이어, 제2장에서는 디지털유산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유산의 관련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행 법제에서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선행적

---

1) 디지털유산의 의의에 관해서는 제3장 제1절 참조.

으로 디지털유산의 의의, 범위를 설정하고 디지털유산의 범위 및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법제 하에서 디지털유산의 법적 성질, 상속여부 등에 관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입법적 대응방안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재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을 위한 제시되어 있는 입법안들(국회에 계류중인 3개의 입법안 및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안)에 대하여 1) 제공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유산의 범위, 2) 제공대상자의 범위, 3) 디지털유산을 제공받은 자의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사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각각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상속법제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하여야 하고, 다른 형태의 유산과는 달리 기술적 차원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디지털유산의 승계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이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한 ‘당사자’로 등장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인 설문조사를 회피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방형 질문을 주로 사용하여 각각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장에서는 향후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의 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결론으로서 도출하였다.<sup>2)</sup>

---

2) 연구의 수행을 위한 공동연구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연구기획(김현수), 제1장 및 제2장(김현수), 제3장(최경진), 제4장(김현수, 최경진), 제5장(설문조사 기획 및 문항 작성: 김현수, 김정혜, 조영기;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 김정혜, 조영기), 제6장(김현수, 최경진).

## 제 2 장 국내외 디지털유산의 현황

인터넷의 등장과 디지털화는 기업의 경영환경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법제도가 상정하지 못한 문제점을 노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회 규범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블로그, 미니홈피 등 홈페이지 서비스의 활용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하여 개인의 일상에서도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정보통신단말기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하여 생성, 유통, 저장되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웹사이트에서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사진, 영상 또는 이메일과 같은 개인적 자산(personal assets)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상에서 타인과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기록인 사회미디어자산(social media assets), 그리고 인터넷뱅킹 등에서 이용되는 정보인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등 다양한 종류나 유형이 존재한다.

디지털 자산의 다양화, 축적화는 사회의 정보화가 진전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종래의 법체계에서 개별적으로 구분되던 법영역을 넘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보의 자유, 규제, 보호라는 원리적 가치를 토대로 다양한 법적 과제를 제시하여 왔다.<sup>3)</sup>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생성, 유통, 소비의 주체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사후에 디지털 자산 또는 정보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최근 ‘디지털유산<sup>4)</sup>의 법적 처리’라는 주제로 이슈화되면서 법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의 보관·처리를 위

3) 이를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크게 지적재산형 보호방식과 비밀형 보호 방식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디지털유산의 의의에 대해서는 제3장 제1절 참조.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ntrustet이라는 회사에서는 2011년 페이스북 이용자 중 40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1 절 국외 현황

### 1. 해외 사례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정책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유산과 관련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미국의 경우 디지털유산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지난 2004년 11월 13일 이라크에 파병중이던 미 해병대원인 저스틴 엘스워스(Justin Ellsworth)가 팔루자에서 사망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다. 엘스워스 사망 후 그의 가족이 사자의 명예를 추모하기 위하여 이라크 파병동안 있었던 엘스워스 해병의 송수신 이메일을 활용하여 추모공간을 만들기로 하고, 사자의 계정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였던 야후에 계정접근을 요청하였다.<sup>7)</sup> 문제는 이용약관과 프라이버시 정책에서 법원의 명령이 없는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의 위반을 우려한 야후가 엘스워스 해병의 가족에 대하여 계정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면서 본격화되었다.

5) Nomi Cahn, Postmortem Life On-Line, Probate and Property, 2011(July/August).

6) Digital Estate Planning: Is the U.K. Ahead of the U.S., <http://estateplanninginfoblog.com/2011/10/digital-estate-planning-is-the-u-k-ahead-of-the-u-s/> 참조(last visited, 2011.11.21.).

7) Jennifer Chambers, Family Gets GI's E-mail, Detroit News, Apr. 21, 2005, available at <http://www.detnews.com/2005/metro/0504/22/A01-157676.htm>; Ariana Eunjung Cha, After Death, a Struggle for Their Digital Memories, Wash Post, Feb. 3, 2005, at A1 참조.

이후 3개월간의 법정 투쟁 끝에 미시건 주 검인법원(probate court)의 명령을 얻은 후에서야 저스틴 해병의 부모는 아들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sup>8)</sup> 이 사건에서 야후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후 계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야후의 이용약관과 프라이버시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자(死者)인 해병대원의 계정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야후의 사례는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일부를 이루게 되면서 사자의 디지털유산의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자의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하여 모호한 규정을 두거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중심으로 이용약관이나 프라이버시 정책을 통해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규정하고 있는 사자의 디지털유산 처리에 관한 규정들이다.

- **야후(Yahoo):** 법원의 명령이 없는 경우 가족 구성원은 사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은 야후에 사망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sup>9)</sup>
- **MSN/핫메일(Hotmail):** 가족 구성원은 사자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사망증명서 부분 등 증명서류<sup>10)</sup>를 핫메일에 제출하고 이메일 계

---

8) *In re Ellsworth*, No. 2005-296, 651-DE (Mich. Prob. Ct. 2005). Yahoo Will Give Family Slain Marine's E-Mail Account, USA TODAY, Apr. 21, 2005, available at [http://www.usatoday.com/tech/news/2005-04-21-marine-email\\_x.htm?POE=TECISVA](http://www.usatoday.com/tech/news/2005-04-21-marine-email_x.htm?POE=TECISVA) 참조.

9) Yahoo! Terms of Service, 27 General Information, <http://info.yahoo.com/legal/us/yahoo/utos/utos-173.html> (last visited Nov. 21, 2011).

10) 요청을 위해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는 고객님의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배송할 배송지 주소(참고: 저희는 우체국 사서함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없습니다.), 계정 소유자의 보호자 또는 유언 집행인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갖고 있고 친척임을 진술하는 문서, 운전 면허증 또는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의 복사본, 사망 증명서의 복사본, 계정에 대한 다음의 정보(계정 이름(참고: 모든 팩스 또는 메일 문서에 정보를 요청

정의 내용이 담긴 CD-ROM을 받을 수 있다. 증명서류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정은 영구히 삭제된다.<sup>11)</sup>

- **지메일/구글(Gmail/Google):**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자가 사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자의 정당한 권한있는 대리인에게 Gmail 계정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된 정보<sup>12)</sup>를 기초로 엄격한 심사를 한 후 이루어지며 드문 경우(rare cases)에 해당된다.<sup>13)</sup>
- **페이스북(Facebook):** 사망한 사람의 계정은 기념 계정으로 설정될 수 있다. 기념 계정으로 설정되면 Facebook 상에서 프로필이 유지되나 친구나 가족만이 고인을 기억하며 사진을 보거나 담벼락에 글을 남길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의 계정을 신고할 수도 있다. 고인의 직계 가족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계

---

하는 계정 이름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소유자의 성과 이름, 생년월일, 국가, 시도 및 우편 번호, 계정이 생성된 대략적인 날짜, 계정에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대략적인 날짜).

Windows Live Solution Center, “How to request data from a deceased user’s account?”, <http://windowslivehelp.com/solution.aspx?solutionid=2aa89618-2244-4187-8383-39b5503587f5> (last visited Nov. 21, 2011).

11) 앞의 자료 참조.

12) Gmail이 요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Your full name; Your physical mailing address; Your email address; A photocopy of your government-issued ID or driver’s license; The Gmail address of the deceased user; The death certificate of the deceased user. If the document is not in English, please provide a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 prepared by a competent translator and notarized; The following information from an email message that you have received at your email address, from the Gmail address in question: - The full header from the email message. See instructions on how to find headers in Gmail and other webmail email providers. Copy everything from ‘Delivered-To:’ through the ‘References:’ line. - The entire content of the message.

Gmail, Accessing a deceased person’s mail, <http://mail.google.com/support/bin/answer.py?hl=en&answer=14300> (last visited Nov. 21, 2011).

13) 앞의 자료 참조.

정이 폐쇄되기도 한다.<sup>14)</sup>

- **트위터(Twitter):** 트위터 사용자 사망의 경우, 트위터는 계정을 폐쇄하고 가족 구성원이 동 계정으로부터 공개된 트윗(public Tweets)을 복구하도록 도울 수 있다.<sup>15)</sup>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사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취급에 있어 범위, 처리절차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유산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사후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와 관련해서 유언이나 신탁을 통한 방법,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관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의 기업들은 디지털 상속재산(digital estate)의 법적 처리에 대하여 사후에 이용자가 발송을 원하는 이메일이나 자료 기타 디지털 정보를 보관·처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관리업체가 생겨나고 있다.<sup>16)</sup>

---

14) Facebook, Data Use Policy, Some other things you need to know, <http://www.facebook.com/about/privacy/other> (last visited Nov. 21, 2011).

15) 이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Your first and last name,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email address), and your relationship to the deceased person. 2. The username of the Twitter account, or a link to the account's public profile page. 3. A link to a public obituary article.

Tweeter, How to Contact Twitter About a Deceased User, <http://support.twitter.com/groups/33-report-a-violation/topics/148-policy-information/articles/87894-how-to-contact-twitter-about-a-deceased-user> (last visited Nov. 21, 2011).

16) 미국 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인헤리트(DataInherit)’도 인트러스테트와 동일한 용도로 개발된 모바일 어플이다. 그 밖에도 스웨덴에 본사를 둔 ‘Mywebwill(마이웹월)’ 등 디지털 유품 전문 관리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표 1] 주요 디지털유산 보관·처리 회사

이 름	제공서비스	비 용
AssetLock (2006)	서류, 편지, 중요장소, 비밀 정보를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이용자 사망시 최소한의 수신인이 이용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AssetLock 가 미리 지정된 수신인에게 미리 지정된 정보를 공개	Yes
DataInherit (2006)	이용자에게 비밀번호와 디지털 문서를 위한 온라인 저장공간 제공	No/yes
Dead Man's Switch (2008)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면서 수신인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이용자가 3개의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Dead Man's Switch는 지정된 수신인에게 이메일을 공개	No
Deathswitch (2006)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면서 수신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No/yes
Entrustet (2009)	이용자에게 온라인 계정의 보안 리스트를 작성 캐 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될 계정 또는 삭제될 계정을 지정해 하거나, 디지털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함	No/yes
Estate++ (2008)	이용자에게 가상 저장소에 중요한 법률문서, 사진, 노트, 지시사항 등을 업로드하게 함	Yes
EstateLogic (2008)	사용자에게 중요한 문서, 개인 지시사항, 사진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함	No/yes

\* 출처: Gerry W. Beyer & Kerri M. Griffin, Estate Planning for Digital Assets, Estate Planning Studies 5-6 (July, 2011).

## 2. 디지털유산 관련 법제

사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규정에 의해 사자의 디지털 자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sup>17)</sup> 다소 논의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자의 디지털유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주에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적용범위나 처리방법에 제한이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커네티컷주에서는 엘스워스 해병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메일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집행인(executor)나 상속관리인(administrator)에게 사자의 모든 송수신 이메일에 대한 복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동 입법은 이메일 이외의 다른 온라인 계정들을 포함하

---

17) Digitaler Nachlass - Der Umgang mit elektronischen Daten nach dem Tod, NJW-aktuell, Heft 49/2010, S. 14 참조. 독일 민법전 § 1922 BGB(Gesamtrechtsnachfolge)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

- (1) Mit dem Tode einer Person (Erbfall) geht deren Vermögen (Erbschaft) als Ganzes auf eine oder mehrere andere Personen (Erben) über.
- (2) Auf den Anteil eines Miterben (Erbteil) finden die sich auf die Erbschaft beziehenden Vorschriften Anwendung.

18) 법 조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b) An electronic mail service provider shall provide, to the executor or administrator of the estate of a deceased person who was domiciled in this state at the time of his or her death, access to or copies of the contents of the electronic mail account of such deceased person upon receipt by the electronic mail service provider of: (1) A written request for such access or copies made by such executor or administrator,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 and a certified copy of the certificate of appointment as executor or administrator; or (2) an order of the court of probate that by law has jurisdiction of the estate of such deceased person.

Conn. Gen. Stat. § 45a-334a (2)(b). 인디애나주도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Ind. Code

고 있지 않으며 유언자가 법규정과 달리 이메일의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불명확하다. 오클라호마(Oklahoma)주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제정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2010년 11월 시행된 법에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유언집행인이나 상속관리인에게 사회네트워크 웹사이트,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 또는 단문메세지 서비스 웹사이트나 이메일서비스 웹사이트에서의 사자의 계정에 대한 관리, 수행, 계속, 종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up>19)</sup> 하지만 오클라호마주의 법 또한 적용범위가 법규정에 한정된 서비스의 계정에 한정되며, 유언집행자의 권한을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이용약관 등을 통해서 사망 후 계정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금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위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제 2 절 국내 사례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정책 현황

최근 인터넷 자율정책기구(KISO)의 연구보고서에서 조사한 국내 주요 포털의 디지털유산 처리 현황에 따르면, 주요 포털에서 취급한 디지털 유산 처리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0.03-0.05%에 불과하다.<sup>20)</sup>

그러나 디지털유산의 처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조인스닷컴이 2010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788명을 대상으로 실

---

§ 29-1-13-1.1 참조.

19) 법조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The executor or administrator of an estate shall have the power, where otherwise authorized, to take control of, conduct, continue, or terminate any accounts of a deceased person on any social networking website, any microblogging or short message service website or any e-mail service websites.

58 Okla. Stat. Ann. § 269.

20) 황용석 외, 사망자의 디지털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1. 11. 8, 99-130면 참조.

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46%(359명)가 폐쇄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 했으며, 33%(260명)는 폐쇄 후 콘텐츠는 상속인에게 넘긴다고 답했고, 21%(169명)는 가족이 상속해 추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 하였다.<sup>21)</sup> 한편, 전자신문이 1000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자신의 사망후 “디지털 유품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4.5%,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9%였다.<sup>22)</sup>

한편, 국내 주요 포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법 그리고 민법의 상속규정을 바탕으로 이용약관과 관련 정책에 따라 디지털유산에 관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 관련 문의는 비밀번호 확인 요청, 탈퇴요청, 본인인증 해제 요청, 스팸 게시물 신고, 게시물 백업 요청, 일시정지 요청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ISO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서비스제공자별로 아래와 같은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sup>23)</sup>

- **SK 커뮤니케이션즈:**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등 제출시 이용해지 가능, 비번, 게시물 백업, 명의 설정 변경 요청은 불가, 스팸 게시물 삭제 및 도용 제재 철회 가능, 이상패턴, 실명인증 제외요청은 가능하다. 단, 미니홈피, 블로그가 제3자에 운용된다는 신고접수시 확인 후 폐쇄로 조치하고 있다.”<sup>24)</sup>
- **KTH(paran.com):** “KTH도 약관상<sup>25)</sup>으로는 서비스 이용권한이나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

21) 안진혁, 위의 글, 5면.

22) 한세희, 디지털 유품 인식 조사, 전자신문 2010년 10월 19일,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010190082> (last visited 2011. 11. 21.).

23) 이에 대한 상세는, 황용석 외, 위의 보고서, 99-130면 참조.

24) 황용석 외, 위의 보고서, 101면 참조.

25) Paran 약관 및 정책, 제23조(양도 금지)(“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http://user.paran.com/policy/service/service.html#tm23> (last visited 2011. 11. 21.).

로는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26)</sup>

- **다음(daum):** 현행 판례와 민법의 일신전속권, 망법의 비밀침해 금지 기조에 따라 본인 외에는 개인의 콘텐츠/메일 제공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 사망시 유족의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 사망확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면 이용해지를 진행해주고 있으며, 비밀번호나 게시물 백업, 명의변경 등을 다음의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사망자의 디지털유산에 스팸 게시물이 게시되어 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있다.”<sup>27)</sup>
- **NHN(nav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5조, 통실험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네이버 ID 사용권리는 양도/상속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이용권한이므로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 권리의 제공불가”하다. 따라서, “사망자 ID 이용권한 및 비밀번호 제공, 명의변경 요청은 제공불가로 처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망자 블로그 등 계정 서비스의 게시물 백업 요청도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공개’ 게시물에 한해서 편의를 위해 데이터 백업을 제공한다. 공개 게시물의 백업은 사망자 사망의 사실 확인과 대리인 등 요청자의 가족관계 확인 및 본인 확인, 그리고 사망자의 사실 확인과 대리인 등 요청자의 가족관계 확인 및 본인확인, 그리고 사망자 자료 요청서 작성 등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그리고 사망자 ID 이용해제 즉 회원 탈퇴 요청의 경우에도 사망자의 사망 사실 확인서, 대리인 등 요청자의 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사망자 자료 요청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sup>28)</sup>

26) 황용석 외, 위의 보고서, 113-114면.

27) 황용석 외, 앞의 보고서, 123면.

28) 황용석 외, 앞의 보고서, 127-128면.

그러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는 등 일관된 입장으로 사자의 디지털유산과 관련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29)</sup> 이러한 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법률의 적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발생하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

29) 예를 들어, KTH는 “유족의 접근 권한 요청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요청자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콘텐츠 접근 권한, 회원탈퇴, 요금청구 취소 및 환불 요청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콘텐츠 접근권한의 경우 신청지점으로부터 2주 이내로 한정하였다. 디지털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시 접근 기간 만료 후 해당 계정은 강제 탈퇴 처리되며, 이혼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사유로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명의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락하고 있지 않다.” 황용석 외, 위의 보고서, 113-114면.

30) 실제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하에서 디지털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용석 외, 앞의 보고서, 137-139면 참조.

## 제 3 장 디지털유산의 개념 및 현행법제

### 제 1 절 디지털유산의 의의와 특징

#### 1. 디지털유산의 의의

디지털유산(遺産)이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1)</sup> 실제로 디지털유산은 그 존재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최근 문제시 되거나 논의의 대상이 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모아보면 대체로 ‘사자(死者)가 남겨놓은 재산 중 디지털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유산과 관련한 핵심적인 쟁점은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사후에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상속을 허용할 것인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상 상속, 유증, 사인증여와 직접 관련을 가진다. 그런데 상속의 대상이 되건 유증이나 사인증여의 대상이 되건 일단 사람이 사망하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속이라는 관점에서 재산의 승계가 논의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다. 이처럼 디지털유산을 상속과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유산을 정의함에 있어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산이 된다. 결과적으로 법적 측면에서 디지털유산이란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

31) 디지털유산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로서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유산에 대한 현행 법제 하의 분석 및 검토의 기초가 된 최경진, “디지털遺產의 法的 考察 - 온라인遺產의 相續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46권 제3호(2011), 253-287면을 비롯하여, 권경선, 디지털 유품: 인터넷 계정 및 내용물을 상속되는가?, 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 2011. 1.; 김기중,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2010.10.13.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세미나 자료집) 정도에 불과하다.

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유산을 이처럼 정의하더라도 법적 평가에 의하여 실제 승계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즉, 민법 제1005조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디지털 형태의 재산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상속을 허용하는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유산의 구체적 범위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거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주요한 디지털유산을 살펴보고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2. 디지털유산의 범위

디지털유산은 디지털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며, 기술의 발전이나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재산이 출현할 수 있다. 디지털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들로는 온라인상의 개인에 관한 정보, 이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 디지털 형태의 음악이나 동영상, 디지털 디자인,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소셜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도메인 이름, 계정(account), 게임 아이템(game item), 아바타(avatar), 게임머니나 가상화폐 등 사람이 디지털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유산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디지털재산이 존재하지만 이를 권리 측면에서 보호하는 법률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해보면 디지털유산의 승계 여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즉,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같이 개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대상이 디지

털 형태로 존재할 때에는 해당 법률을 기초로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적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디지털유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온라인상의 디지털유산과 오프라인상의 디지털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디지털유산은 UCC(User Created Content), 인터넷 상의 저작물, 인터넷 상의 상표, 인터넷 상의 디자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상의 각종 게시물, 댓글, 도메인 이름, 계정(account), 아이템(item), 아바타(avatar), 인터넷 상의 게임머니나 가상화폐와 같은 전자적 형태의 지급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오프라인상의 디지털유산으로는 CD나 USB 등 오프라인 저장매체에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권리 측면의 분류나 온라인·오프라인 소재 여하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지만 디지털재산의 상속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디지털유산의 일신전속적 성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상 실제 상속 가능한 재산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여야 하지만, 법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일신전속적인 것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신전속적인 것도 일단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오프라인상의 디지털유산은 오프라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어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일단 오프라인 저장매체를 기준으로 상속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속재산 처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디지털유산, 특히 온라인상의 디지털유산(이하 “온라인遺產”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sup>32)</sup>

---

32) 이하에서는 디지털유산과 온라인유산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부분에서는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이 글이 온라인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 만큼 온라인유산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온라인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3. 온라인유산의 특징

#### 가. 디지털 형태로 온라인상에 존재

온라인유산의 기본적 특성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유산은 ‘디지털’의 일반적 특성<sup>33)</sup>에 따라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온라인유산의 승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온라인유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또한 온라인유산은 온라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매체의존성이 훨씬 감소하며, 고정된 거처가 없이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탈지역 성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온라인유산이 오로지 온라인상에만 존재할 때에는 그 존재에 대한 확인이나 구체적 확정이 쉽지 않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같이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 나. 다양성 · 혼합성

종래의 유산은 물리적으로 유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물에 하나의 권리가 인정되는 전통적인 물건-물권 혹은 채권 관계가 기초가 되어 상속제도가 운용된다. 그런데 온라인유산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가 서로 결합되거나 혼재함으로써 다양한 특성을 가진 정보가 혼재 · 융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혼재 · 융합된 정보에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 보호대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 디자인

---

33) 디지털화의 기능 및 특성에 대하여는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5-8면. 이에 의하면, 디지털화에 따라 장점으로서 정보의 처리, 검색 및 교환에서 혁신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권, 채권 등 다양한 권리의 보호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혼합성으로 인하여 온라인유산에 대한 간편한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승계가 가능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거나 실제 승계 절차 및 승계 후 처리 절차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 증대

온라인상에 소재하면서 유동성이 강한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유산의 본래 보유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통제·관리 여부가 해당 온라인유산이 저장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좌우된다. 예를 들면, 온라인유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관리를 위한 접속권한이 이메일 서비스나 블로그 서비스 등 온라인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좌우될 수 있다. 반면, 오프라인상의 디지털유산은 그것이 저 장된 유형의 저장매체의 귀속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온라인유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하에서 온라인유산을 현행법상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도출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온라인유산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제 2 절 현행법제에서의 디지털유산

#### 1. 디지털유산의 법적 성질

디지털유산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유산이 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유산은 다양한 성질을 가진 정보가 결합·융합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정보의 내용에 따른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디지털유산의 개별적 유형이 법령에 의하여 권리가 부여되는 등 특별히 보호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 정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개별 법률에 따라 법적 성질이 결정될 수 없는 정보는 일반법인 민법상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 가. 주요 유형별 법적 성질

#### (1) 콘텐츠에 대한 권리

블로그, 미니홈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터넷상의 서비스에 기록된 글,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의 콘텐츠가 개별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콘텐츠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sup>34)</sup>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준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sup>35)</sup>이면 족하다.<sup>36)</sup> 이러한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호 · 문자 · 도형 · 색채 · 음성 · 음향 ·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sup>36)</sup>에 해당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법에 의하면 정당한 권리의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

---

34)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35)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44면.

3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금지의무의 설정으로부터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간 보호를 받게 되며,<sup>37)</sup>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여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sup>38)</sup>

### (2) 계정(account) 이용권

인터넷에 접속하여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은 인터넷 상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자의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술적으로 아이디(ID)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 즉, 계정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이디 외에 최소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정 이용권의 법적 성질은 프로그램이용계약 혹은 서비스이용계약 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준비해놓은 약관에 의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정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계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및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채권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온라인 화폐나 포인트 등 지급결제수단

온라인서비스 내에서의 화폐, 사이버머니 등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된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

---

37)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 제1항.

38)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8조 제1항.

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실적이나 구매실적 등에 따라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의 선급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사이버머니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구입실적, 사용실적,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에 적립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점(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을 고려할 때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동법 제2조 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 나. 기타 정보에 대한 권리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물이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권리로써 보호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정보가 민법상 물건인가 나아가 물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최근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정보의 민법상 규율을 논의할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

우선 정보가 민법상 물건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민법 제9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물건을 한정하며 총칙상의 독자적인 물건 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요건과 일체적으로 파

39) 손진화, “가상세계화폐에 관한 규정의 검토”,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가상세계산업진흥법제정방안 세미나 자료집(2010.12.13.), 4-5면.

악하고 있다. 이러한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물건의 요건으로서 ①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 ② 배타적 지배(관리)가능성, ③ 비인격성(外界의一部), ④ 독립성(단일성)을 요구한다.<sup>40)</sup><sup>41)</sup> 그러나 ① 물건의 개념을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괄하는 추상적 법률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그 기능적 의의를 총칙적·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되면,<sup>42)</sup> 개별 권리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물건의 요건을 고찰함에 앞서서 민법 총칙편 제98조에 규정된 물건의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② 통설에 의하면 민법상 물건을 포괄하는 일관된 물건개념, 즉 일반적·총칙적 물건개념을 정립할 수 없으며, 더욱이 물건의 전체적인 외연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직접 그 내포만을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나아가 ③ 종래의 통설은 물건에 관한 제98조의 규정에 총칙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sup>43)</sup>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지어주는 물건요건에 관하여는 물권과의 일체적 파악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는 별도로 제98조의 물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인 일반적·총칙적 물건요건을 독자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결국 사회·경제의 변화, 기술의 발전, 새로운 경제거래의 대상의 규율을 위한 물건 개념의 재검토 필요성을 고려하여 권리의 객체 내지 목적물로서

40)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3, 267-270면;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168-170면;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3, 314-317면;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1, 269-271면;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5, 894-896면.

41) 통설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의 해석론에 쫓아 디지털 정보를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입법적 해결 과정에서 현행법의 틀을 유지한 채 디지털 정보를 포섭하기 위하여 관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판단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한다. 배대현,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V),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346면.

42) 최경진, “물건요건론”, *비교사법*(25), 56-58면.

43) 고상룡, *위의 책*, 267면; 곽윤직, *위의 책*, 167면;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법문사, 1991, 190면; 김주수, *위의 책*, 268면; 김중한, *민법총칙*, 진일사, 1978, 237면;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2003, 350면.

의 성격을 가지는 대상으로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제계·재화계에 객관화된 존재로서 물건 개념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sup>44)</sup> 이처럼 변화된 시각 하에서 총칙상 물건에 요구되는 일반요건은 유체물·무체물, 비인격성, 경제적가치성(거래대상성), 관리가능성이다.<sup>45)</sup> 이와는 별도로 민법상 소유권을 포함한 물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권의 성질에 따라 그 객체에 요구되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 물건의 일반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보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외적 재화계에 객관화된 존재로서의 정보가 비인격성·경제적가치성·관리가능성의 요건을 갖추는 한 민법상 물건성을 인정할 수 있다.<sup>46)<sup>47)</sup></sup>

이처럼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일반요건과는 별도로 해당 권리에 적합한 특별요건을 충족

---

44) 최경진, 위의 논문, 63면.

45) 최경진, 앞의 논문, 67-71면.

46) 최경진, “민법상 정보의 지위”, 산업재산권 제15호, 2004, 17면.

47) 현재의 유력한 견해가 디지털 정보 자체는 유체물도 아니고 배타적 지배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도 형법상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기초로 정보의 물건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권리보호의 객체는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일정한 권리의 객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이 정보 그 자체이고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보호대상도 상당한 부분의 제한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 자체이며, 정보의 무단사용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서울지법 2001.12.7. 선고 2000 가합54067 판결이나 eBay, Inc., v. Bidder's Edge, Inc 사례), 대법원(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소유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귀속이나 소유에 관념이 필요한 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저작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한 점은 저작정보를 일정한 권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김기중,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2010.10.13.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세미나 자료집), 24면.

시켜야 한다. 즉, 소유권의 특질로부터 배타적 지배가능성, 특정성, 독립성의 요건이 요구된다. 그런데 정보, 특히 디지털정보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정보의 유통·공유를 주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충족되기 어려우며, 디지털정보의 복제·배포·전송이 매우 쉽기 때문에 특정성이나 독립성을 충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디지털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확보하고 공시방법을 도입하여 특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sup>48)</sup>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디지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적어도 조리를 근거로 하여 물권적 권리 이외의 새로운 권리(非物權的 權利)가 창설된 것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sup>49)50)</sup>

48) 김기중, 위의 논문, 25면은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정보 자체를 일정한 권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필요 한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자체의 법적 성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에 의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정한 권리의 대상인 이러한 ‘정보 자체’의 귀속 주체는 이용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약관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자, 즉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보 자체’에 관한 권리가 귀속되고,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약관에 정해진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고, 해당 정보 자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결국 필자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49) 대법원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사법상 환경권의 법적 근거를 조리에서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5.5.23. 선고 94마2218 결정. 한편, 대법원은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던 종중에 있어서 그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민법 제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면서 조리의 法源性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50) 최경진, 위의 논문 “디지털재산의 法的 考察 - 온라인재산의 相續을 중심으로 -” 참조.

## 2. 온라인유산의 상속 여부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재산이란 개념은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어느 사람에 속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하거나 이보다는 넓게 의무의 집합까지 합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sup>51)</sup> 그러나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하거나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합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 전체를 일컫는다.<sup>52)</sup> 이처럼 재산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면,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물건 및 권리·의무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의미하게 된다. 아래에서 주요 유형별로 상속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 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권리

온라인유산이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재산권만이 승계된다. 저작권 중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sup>53)</sup> 또한 온라인콘텐츠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표시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5년간 영업에 관한 이익을 보호받게 된다. 이러한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영업에 관한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은 동법에 따른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

51) 박준서 집필대표, [주석민법] 민법총칙(2), 사법행정학회(2001), 223면.

52) 꽈윤직, 위의 책, 171면.

53)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나. 온라인 계정 이용권

온라인 계정 이용권은 이용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써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계약에 따라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적 권리로 파악할 수 있다.<sup>54)</sup> 온라인계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핵심적인 요소로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활동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 관문의 특성이 강하다. 또한 개인정보도 순수하게 인격적 특성만을 가진 것은 아니고 관련 법률에 따르더라도 당사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수집 및 유통이 가능한 경제적 재화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계정 그 자체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이용권으로 파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속도 인정할 수 있다.<sup>55)</sup> 다만, 계정의 상속을 이용하면, 계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속 대상이 아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상속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 행사나 이용은 불가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험 때문에 계정의 상속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

54) 동지 김기중, 앞의 논문, 27면.

55) 이에 대하여 “계정이용권은 사망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계정의 이용행위는 가상공간에서 인격의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해서 접속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자 ‘개인’의 신분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계정이용권도 사망자 개인에게 전속한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기중, 위의 논문, 27면. 이 견해는 이에 대한 추가적 근거로 약관 상의 부정 이용 및 양도 금지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약관에 양도금지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법적 성질이 상속 불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본문에서 제시한 근거들로부터 상속 가능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피상속인의 개인식별정보나 계정을 이용하는 중에 기록된 각종 활동은 인격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도 상속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개인신원정보나 활동 기록 등의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된다.<sup>56)</sup>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도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 정의되어, 두 법 모두 사망한 자에 대한 정보는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sup>57)</sup> 한편, 아래에서 따로 검토하는 비공개 온라인정보가 아닌 이상 활동기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56) 실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 중에 이러한 이유로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진혁, “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 현황 및 문제점”,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2010.10.13.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세미나 자료집), 1면.

5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온라인 전자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권리

전자화폐,<sup>58)</sup> 온라인상품권, 사이버포인트, 온라인 마일리지, 사이버캐시 등 다양한 온라인 전자지급결제수단은 그 특성이 전자지급약정에 따른 채권적 권리로서 일신에 전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될 수 있다.

#### 마. 기타의 온라인정보에 대한 권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온라인정보는 결국 일반론으로서 일반적인 온라인정보의 상속성이 문제된다. 온라인정보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견에 의하면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지만, 물권의 객체에는 해당되기 어렵다. 다만, 민법 제1조의 조리(條理)를 근거로 한 정보에 대한 새로운 비물권적(非物權的) 권리의 창설을 인정하는 해석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결국,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 무의 승계의 대상으로서 온라인정보에 대한 채권적 권리나 조리에 의한 새로운 권리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sup>59)</sup> 문제는 해당 온라인정보의 내용이 피상속인의 인격이나 신체 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가 부인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들로서 전자우편, 비공개 온라인 일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정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검토하겠다.

---

58) 현금통화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전자화폐는 제외된다. 통화로서의 전자화폐가 출현하면, 이는 곧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통화 화폐의 상속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그러한 전자화폐도 당연히 상속성이 인정된다.

59) 김기중, 위의 논문, 26면에서도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디지털 정보인 디지털 유품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본다.

### 바. 비공개 온라인정보에 대한 권리

전자우편이나 온라인 일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일반적 정보이지만 피상속인의 인격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도 일반적인 온라인정보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인격적 성격이 가미된 비공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신에 전속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기나 전자우편 등이 피상속인에 의해서만 작성·관리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별도의 일신전속적 권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종래 오프라인상에서도 종이로 된 일기나 제3자와 주고받은 편지를 피상속인이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러한 일기나 편지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온라인 전자우편이나 일기라고 하여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비공개 온라인 정보에 대하여도 상속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sup>60)</sup>

다른 한편, 비공개정보가 관련 법률에 따른 비밀 혹은 통신비밀에 해당되어 상속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 서비스제공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

---

60) 동지 김기중, 앞의 논문, 27면.

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sup>61)</sup> 또한 대법원은 타인의 비밀의 의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sup>62)</sup> 이를 기초로 살펴보면, 온라인상의 전자우편이나 일기 등 피상속인의 비공개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어 침해 · 도용 · 누설이 금지된다. 그러나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한 행위로서 침해, 도용, 누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공개 온라인정보 중에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이기 때문에 제49조에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sup>63)</sup> 또한 비공개 온라인 정보의 상속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동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전기통신’은 “전화 · 전자우편 · 회원제정보서비스 · 모사전송 ·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 문언 ·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sup>64)</sup> 여기에서 전자우편도 기본적인 대상이 되지만, 모든 전자우편이 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즉 송수신 과정에 있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이나 타인과 교환한 메시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비공개 온라인정보에 대하여도 상속이 가능하며, 비밀보호를 위한 관련규정과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61)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162 판결.

62)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7309 판결.

63) 이와는 달리 김기중, 앞의 논문, 28면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64)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 제 3 절 소 결

현행법상 사망자의 유산을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로는 상속제도가 주를 이룬다.<sup>65)</sup> 상속은 구체적 재산의 형태를 묻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속해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 이로부터 온라인유산의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그 승계가 인정 또는 부인되지 않는 한 민법상 상속제도에 의하여 일반적·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민법상 상속제도에 의하여 승계가 인정되는 것들은 그에 의하여 법적 처리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일정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존재하는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순차적 검토를 위하여 먼저 현행 상속법의 규정을 보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유산도 기본적으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개별적·구체적 유형의 경우에도 상속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현재 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계정이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유산의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민법의 해석론과 배치되며, 이는 명확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처럼 상속법에 의하여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규 입법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에서 모든 유형의 온라인유산을 살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온라인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망자의 순수한 인격적 이익에

---

65) 민법 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사망자의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가 있다.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온라인유산은 다양한 성격의 디지털재산이 서로 결합·혼재되어 온라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산을 구분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상속가능한 정보와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성격의 정보가 혼재된 경우에 무수히 많은 사망자의 온라인유산 중에서 각각을 선별하여 승계를 허용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에 가깝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를 보충하여 상속가능한 온라인유산을 비교적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절차를 두거나 사전에 사망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유도·촉진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 4 장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 제 1 절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고려사항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유산 중 개별법에 의하여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와 민법의 해석상 정보의 재산성을 넓게 파악하여 해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처리는 대부분 민법의 상속규정의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상속규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과는 달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메일, 블로그, 웹사이트 호스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유산을 생성, 이용, 전파, 저장, 삭제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스토리지 등)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 이용은 대부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구성되는 계정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형태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생성된 디지털유산에 대한 통제, 접근, 그리고 삭제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잘 나타나고 있는 사례는 이메일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엘스워스 해병의 가족이 아들의 추모를 위하여 이메일 계정의 접근을 요청하였으나, 야후의 이용약관에서는 “야후의 계정은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야후의 ID와 이용자의 계정내의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망으로 소멸된다”<sup>66)</sup>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가족의 계정접근 요청을 거절하였다.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다음(daum)의 이

---

66) Yahoo! Terms of Service, § 27.

용약관에서는 본인 이외에는 개인의 콘텐츠/메일의 제공이 불가하다는 원칙하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비밀번호나 계시물 백업, 명의변경 등이 이 원칙에 의하여 실무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러한 실무적 처리형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현행 개별법을 근거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해석적 관점에서 많은 경우 디지털유산의 상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실질적인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 상속인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의 거래비용과 집행비용을 상승시키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은 이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sup>67)</sup>

한편, 입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회적 가치, 즉 의미자체에 다의성,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보라는 속성을 가진 디지털유산을 둘러싼 역사적 가치와 지식전파(knowledge spillover)라는 측면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다양한 이해관계와 조정하는 구조화 작업의 지도적 가치원리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개인의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보존의 사회적 중요성을 역설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sup>68)</sup> 그러나 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정하고 있는 가치원리, 즉 역사적 가치와 한 개인의 창작이 타인의 창작을 도와 궁극적으로 한

---

67) Molly Wilkens, Privacy and Security During Life,, Access After Death: Are They Mutually Exclusive?, 62 Hastings L.J. 1037, 1061-1064 (2011) 참조.

68) 예를 들어, 미 국회도서관은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트윗을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Why the Library of Congress cares about archiving our tweets,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0/04/why-is-the-us-govt-archiving-your-tweets-we-ask-them.ars> (last visited, 2011. 11. 01).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전파효과의 고려라는 법경제학적 가치를 이용자, 상속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지는 이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가치원리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구조화 작업은 동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다.<sup>69)</sup>

그렇다면 현행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를 위한 입법적 해결을 위한 접근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해관계는 디지털유산을 생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나 재산적 권리에 관련된 이해관계, 사자의 디지털유산을 제공받을 상속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현행 법률에 의한 법적 책임이나 디지털유산의 실무적 처리에 대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게 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의 방향은 이들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가치원리 위에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sup>70)</sup>

먼저 앞서 도출된 현재의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입법의 기본방향은 이용자 사후에 디지털유산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유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규에 사자의 디지털유산의 경우 일정한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1) 제공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유산의 범위, 2) 제공대상자의 범위, 3) 디지털유산을 제공받은 자의 권한의 범위, 4) 자율적 규제의 경우 필요한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69) Deven R. Desai, *Property, Persona, and Preservation* 89-93 (TJS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1101648, 2008) 참조.

70) Jonathan J. Darrow & Gerald R. Rerrera, *Who Owns a Decedent's E-Mails: Inheritable Probate Assets or Property of the Network?*, 10 Legis. & Pub. Pol'y 281, 317 (2007) 참조.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국회에 제출된 3개의 입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법률시안 및 가이드라인(안)을 검토 한다.

## 제 2 절 국회 입법안 검토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대하여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의 기본적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 1. 개정법안의 내용

#### 가. 박대해의원 대표 발의안<sup>71)</sup>

동 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망시 일정한 범위의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사망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제25조의 2와 제30조의 2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사망자의 미니홈피 등의 관리에 관하여 제25조의 2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이하 “미니홈피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895, 2010.7.21.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관리하게 하고 있다.<sup>72)</sup> 배우자 등이 사망자의 미니홈피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사실을 알기 쉽게 명시하여야 하며, 배우자 등은 사망자의 미니홈피 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sup>73)</sup> 그리고 배우자 등의 요청의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sup>74)</sup>

또한, 본인의 미니홈피 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의 2를 신설하여 이용자는 자신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지정된 자가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sup>75)</sup> 한편, 제25조의2 또는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sup>76)</sup>

#### 나. 유기준의원 대표 발의안<sup>77)</sup>

동 법안은 사망자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는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

---

72) 안 제25조의2.

73) 안 제25조의2 제3항, 제4항.

74) 안 제25조의2 제5항.

75) 안 제30조의2.

76) 안 제71조 제3호의2.

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831, 2010.7.21.

호를 강화하는데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 정보에 관한 목록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목록의 통보와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sup>78)</sup>

## 2.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sup>79)</sup>

동 법안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제3자에 의한 관리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에게 이용자의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 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

---

78) 안 제29조의2.

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금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00, 2010.9.9.

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80)</sup> 그러나 배우자 등은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81)</sup>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의 요청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sup>82)</sup>

또한,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sup>83)</sup>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 통보를 받은 경우 배우자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제외한 해당 개인정보를 자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sup>84)</sup>

#### [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신설 조항
박대해의원 대표발의안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 ①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이하 “미니홈피등”이라 한다)의

80) 안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81) 안 제25조의2 제3항.

82) 안 제25조의2 제4항.

83) 안 제25조의3.

84) 안 제29조 제5호.

#### 제 4 장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대표발의	신설 조항
	<p>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배우자등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기 쉽게 명시하여야 한다.</p> <p>④ 배우자등은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요청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0조의2(미니홈피등의 관리자 지정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미니홈피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한 때</li> <li>2. 실종 또는 의식이 불명한 때</li> </ol>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의2. 제25조의2 또는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p>

대표발의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	신설 조항
	<p>제4장 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9조의2(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그 상속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목록의 통보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p>	<p>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5조의2(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 ①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배우자 등은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요청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8조의3(사망자의 통보) ①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자의 성명</li> <li>2.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li> </ol>

#### 제 4 장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대표 발의	신설 조항
	<p>② 제1항에 따른 사망자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른”을 “제25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는 경우와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5.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로 통보된 경우</p>

### 3. 개정 입법안의 검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3개의 안은 모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자의 디지털유산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현행 법률하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안은 제공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유산, 제공 대상자, 제공대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국회 제출 입법안의 비교

	박대해 의원안	유기준 의원안	김금래 의원안
입법취지	개인정보보호 ISP 면책 근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ISP 면책 근거
디지털유산 제공의 범위	미니홈피, 블로그	개인정보 목록	블로그, 홈페이지 등
제공대상자의 범위	사전 지정 관리자,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 · 후견인	상속인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 · 후견인

	박대해 의원안	유기준 의원안	김금래 의원안
제공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미니홈피, 블로그 관리권한 (단, 타인비밀 보호의 경우 일부만 관리)	개인정보 파기 요청권한	블로그, 홈페이지 등 관리권한 (단, 타인비밀 보호의 경우 일부만 관리)
절차, 방법 등	대통령령 위임	대통령령 위임	이용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요청가능 (단,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디지털유산 관리자 지정	근거규정 있음	근거규정 없음	근거규정 없음

이하에서는 입법적 대응방향을 위한 개별적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삼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입법안을 검토한다.

### 가. 입법취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모두 그 입법취지의 중심을 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디지털유산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각각의 입법안의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다.

#### [박대해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

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개설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사망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상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의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는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개설 ·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개설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현행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를 위한 입법적 대응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첫째, 현행 법률에 의한 법적 책임이나 디지털유산의 실무적 처리에 대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게 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관련 이해관계인의 잠재적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유산을 생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나 재산적 권리에 관련된 이해관계, 셋째, 디지털유산을 제공받을 상속인의 이해관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입법 취지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조문의 체계적 위치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3개의 입법안은 모두 조문의 위치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에 두고 있다.<sup>85)</sup> 그러나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는 즉 디지털유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 또는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이 사자의 생전모습의 연장 또는 발현(an extension or expression of a dead's persona)을 위하는 등 디지털유산을 제공받을 상속인의 이해관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86)</sup>

---

85) 우선 체계적 문제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4장에서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86) Deven R. Desai, Property, Persona, and Preservation, TJSR Legal Studies Research

#### 나. 제공되는 디지털유산의 범위

국회에 제출된 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사자의 디지털유산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제공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유산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우선 박대해의원안은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에 한정하고 있고, 유기준의원안은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김금래의원안에서는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유산은 다양성, 혼합성 등 정보재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그 유형 또한 개인적 자산(personal assets), 사회미디어 자산(social media assets),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등 다양한 종류나 유형이 존재한다.<sup>87)</sup> 이러한 유형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은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유산을 포괄적으로 아우르지 못하며, 디지털유산과 관련한 향후의 법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기준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동 법안은 개인정보의 일신전속성을 전제로 삼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인격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신전속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개인정보”라고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개인정보와 동일한 것인지 의문이며, 개정안이 의미하는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도 불명확하다.

---

Paper No. 1101648, 2008. 3, 87-89면.

87) 이에 대한 상세는 제3장 제1절 참조.

#### 다. 제공대상자의 범위

현행 계류 중인 입법안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디지털유산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 박대해의원안에서는 법률의 규정으로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사망한 때나 실종 또는 의식이 불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미니홈피 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유기준의원안은 ‘상속인’으로 제공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금래의원안에서는 박대해의원안과 동일하게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공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현실적, 법실무적 측면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이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재산의 승계라는 상속의 본질을 넘어 이용자의 생전에 이루어진 생활 전반, 특히 디지털유산과 같이 온라인 활동이 가족 이외의 친밀도가 깊은 제3자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민법의 상속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 사후 디지털유산 제공대상자의 범위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의 효과를 감안하거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유산의 제공대상자라는 증명의 문제를 감안하는 등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법상 상속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제공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박대해의원안과 김금래의원안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디지털유산의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88)</sup> 한편, 유기준의원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통보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sup>89)</sup> 박대해 의원안과 김금래의원안에서는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디지털 유산 관리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의 차별화된 점은 대법원장에게 사망신고된 사망자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온라인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망자의 통보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동 법안에 따라 관리자가 관리하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문제는 관리자의 관리는 사망신고 후 6개월 내에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받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폐기에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망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파기를 법령에 적극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를 통한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제 3 절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시안 및 가이드라인(안) 분석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에서 가이드라인 및 법률시안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입법안을 제안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유산의 상속에 관한

---

88) 박대해의원 대표발의안 제25조의2,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 제25조의2.

89)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 제29조의2.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약관이나 자율적인 규약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안된 법안이 실제 입법되지 않더라도 법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규약에 의하여 디지털유산에 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하에서 각각을 소개하고 검토해보겠다.

## 1. 법률시안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

법률시안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서 제안하였다. 동 법률시안에 따르면 “제44조의11(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정보의 처리등)”을 신설하는 형태로 총 3개 항을 제안하고 있다.<sup>90)</sup>

법률시안에서는 디지털유산을 사망한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전송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 중인 공개 또는 비공개의 게시물, 전자자료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디지털유산에 대하여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sup>91)</sup> 다만, 사망한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미리 지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망한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sup>92)</sup> 디지털유산의 상속에 관해서 동 법률시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기본적으로 민법 중

---

90) 황용석 외, 위의 보고서, 139면.

91) 법률시안 제44조의11 제1항.

92) 법률시안 제44조의11 제1항 단서.

상속편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하였다. 이는 디지털유산의 상속에 관하여 가능한 민법과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은 또한 디지털유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요청절차와 방법,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유산의 범위, 정보의 성격에 따른 제공의 절차와 제공방법, 디지털유산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여부 등 디지털유산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의하도록 하였다.

#### 나. 법률시안의 검토

법률시안은 디지털유산의 상속에 관한 명확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즉, 동 법안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유산의 상속 가능성을 긍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 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속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민법의 상속편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기존의 상속법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한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생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지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지정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이 디지털유산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와 비용에 의할 것인지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자율 규제를 강조한 점이 특색이다.

동 법률시안은 민법상 상속편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디지털유산에 대한 상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검토나 해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유산의 상속성을 긍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특히 민법 상속편의 해석에 의할 때 디지털유산의 상속을 긍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 있으며, 더욱이 디지털유산의

제공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동 법률시안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아가 만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약관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하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으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시안이 없을 때와 동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법의 의미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용자가 사전에 미리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지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에 관한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입장과 상충한다. 이러한 민법상 유언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배제하고 법률시안에 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민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 2. 권고안

### 가. 권고안

KISO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유산(사망한 회원의 계정과 관련 컨텐츠) 처리 기준에 관한 권고안”이다. 동 권고안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회원의 계정에 관한 권리, 그 회원이 남긴 각종 정보 또는 컨텐츠에 대한 취급방법에 대한 공통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고안에 의한 디지털유산은 “그 회원의 계정에 관한 권리, 그 회원이 남긴 각종 정보 또는 컨텐츠”를 의미한다.

권고안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중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제공되는 회원용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사망한 회원이 미리 정해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권고안이 적용된다. 결국 권고안은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회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선택절차를 마련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을 제안하였지만, 그 명칭에서 보다시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권고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나 그 상속인이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고, 서비스제공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비스제공자의 약관에 반영되어 이용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로소 권고안의 내용이 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권고안은 구체적으로 유형을 나누어 그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유산의 존재여부를 조회하여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망한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않지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의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고 사후처리를 마친 후 계정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망한 회원의 계정이용권 자체는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아이디/비밀번호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에게 접속을 허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 그 기간의 경과와 함께 계정 폐쇄 및 계정이용권의 중단이 가능도록 했다. 다만, 사이버머니나 포인트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용권에 대해서는 권고안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신함이나 수신함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우편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적절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거나 상속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안 상의 처리기준에 의한 사후처리를 마친 후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디/비밀번호, 계정이용권, 전자우편에 대해서 법령이나 법원 등 정당한 국가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한 자율적인 규제방식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공개된 게시물 등의 콘텐츠는 상속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백업 범위는 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비공개 게시물 등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공개된 게시물 등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처리토록 하였다. 미니홈피, 개인적인 카페, 블로그, SNS 등 공개된 개인용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그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고인을 추모하는 용도로만 허용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서비스제공자가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사망한 회원의 인격을 대신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고, 서비스제공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카페 운영자의 지위 등에 대한 상속은 허용하지 않으며, 인적사항을 제외한 로그정보나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법령이나 약관 등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폐기토록 하였다.

처리절차는 정당한 상속인에 대한 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토록 했으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단독신청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토록 했다. 또한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상태에서는 사망한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의 내용을 상속인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서비스제공자의 정책에 따라 백업서비스나 접근권한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서비스제공자는 상속인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에 계정 소유주의 사망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권리안의 검토

권고안은 기존 상속법의 틀을 흔들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표준적인 권리안의 기준을 자유롭게 채택하여 약관에 담고, 이를 다시 회원들이 승인함으로써 계약에 기반을 둔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개별 기준을 보면, 상속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권리안이 단순히 권리에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가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앞서 본 법률시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상 유언 규정이 엄격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망한 회원이 미리 선택한 경우에 그에 의하도록 한 점에서는 강행규정인 유언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 4 절 소 결

디지털유산과 관련한 법적 처리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적 대응을 위한 논의는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개의 입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법률시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종래의 상속법제와 달리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디지털유산의 제공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여 디지털유산의 상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들 입법안들은 디지털유산처리에 대한 구체적 접근 즉, 1) 디지털유산의 범위, 2) 디지털유산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3) 이용자가 자기정보결정권의 모습, 4) 디지털유산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율방식 등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유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 제 5 장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제 1 절 조사개요

온라인상의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상의 디지털유산은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 형태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속법 제의 적용범위 내에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유산의 개념과 범위, 디지털유산과 관련된 이해관계, 사후 디지털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유언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상속법제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즉 온라인상의 디지털유산은 새롭게 등장한 법률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과 같은 기존의 유사한 제도를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환경과 수반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사는 온라인상의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일반인 인식 조사보다는 전문가 의견 조사의 방식을 택하였다. 일반인 인식 조사는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여 제도의 대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상속법제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하여야 하고, 다른 형태의 유산과는 달리 기술적 차원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디지털유산의 승계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이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한 ‘당사자’로 등장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집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디지털유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였다. 다섯 개의 범주로 구성된 집단은 법조인, 관계기관 전문가, 법학교수, ISP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집단이다. 온라인상의 디지털유산은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분야로서, 관련된 분쟁의 절대수가 적고 선행연구도 드물어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의 수 또한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집단별 응답자의 선정은 임의표본 추출방식으로 하였다. 디지털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로서, 법조인 집단은 지적재산권,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판사로 구성하였고, 관계기관 전문가는 인터넷서비스 관련 연구자 및 실무 담당자를 선정하였다. 법학교수 집단은 민법, 지적재산권법을 전공 또는 연구하고 있는 교수 중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ISP 담당자는 디지털유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포털 사이트 및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련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는 소비자단체, 정보통신 관련 운동단체 등 관련 단체의 활동가 중에서 선정하였다.

범주별 목표치는 법조인 8부, 관계기관 전문가 4부, 법학교수 9부, ISP 담당자 5부, 시민단체 활동가 4부로 정하였다. 3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28부를 회수함으로써 84.8%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각종 경로를 통하여 소개받은 응답자들에게 직접 전화로 설문을 의뢰하고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한 뒤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한 설문지를 다시 이메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기기입방식은 면접방식에 비하여 설문이 미완성되거나 응답자의 답변의 의도가 연구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수한 설문을 1차 검토하고 누락되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응답이 있는 경우, 응답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하여 추가응답을 받았

다. 조사기간은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었다.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조인, 관계기관 전문가, 법학교수, ISP 담당자, 시민 단체 활동가로서 디지털유산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li> </ul>
표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28명</li> </ul>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기입방식, 이메일 조사</li> </ul>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의표본추출방식</li> </ul>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11월 14일~11월 19일 (총 6일간)</li> </ul>

응답자의 일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 4] 응답자의 일반 사항

(n=28)

	구 분	빈도(명)	%
연령	20대	0	0.0
	30대	11	39.3
	40대	13	46.4
	50대	4	14.3
	60대 이상	0	0.0

	구 분	빈 도(명)	%
경 력	5년 미만	6	21.4
	5년 이상 10년 미만	8	28.6
	10년 이상	14	50.0
직 종	법조인	7	25.0
	관계기관 전문가	3	10.7
	법학교수	9	32.1
	ISP 담당자	5	17.9
	시민단체 활동가	4	14.3

## 제 2 절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다룬 내용은 크게 6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 사후의 디지털유산의 범위, 둘째, 이용자 사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유산의 관리권한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셋째,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 넷째, 이용자가 생전에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의 종류, 다섯째, ‘제3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처리 신청이 가능한 이용자의 상태, 여섯째,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율 방식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6가지로 질문의 범주를 선정한 다음 각 범주에 따라 질문 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화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연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 설문 내용을 확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은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명목 척도 및 서열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거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선택지로 제공하였고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

자에게 서열을 매겨 주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선택지의 제시가 선택의 폭을 좁히고 다양한 의견의 도출을 막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개방형 질문을 주로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으로 얻은 응답자들의 답변은 유사 응답들을 코딩하여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명목 척도로 구성된 설문 항목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전체 응답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전체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은 관계로 응답자의 집단별 비교는 필요시로만 제한하되, 개방형 응답을 인용할 때에는 집단을 표기하여 집단별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조사 내용을 항목별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조사내용 요약

구 분	세 부 항 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통계학적 변수: 응답자 연령대, 관련업무 종사기간</li> </ul>
디지털유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유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항</li> <li>‘제3자’의 권한 제한 범위 및 방식</li> </ul>
디지털유산의 관리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자’의 범위</li> <li>민법상 가족, 상속인으로 제한하는 이유</li> <li>민법상 가족, 상속인 이외의 ‘제3자’의 범위</li> </ul>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의 우선순위</li> <li>‘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한 평가</li> </ul>
이용자의 사전조치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의 생전 의사결정 표현 방법</li> <li>에스크로 서비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제도적 지원</li> </ul>

구 분	세 부 항 목
‘제3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처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자’의 신청이 가능한 이용자의 상태</li> </ul>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 규율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법 및 자율규제의 범위</li> <li>디지털유산의 범위에 관한 자율규제 권장사항에 대한 의견</li> <li>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에 관한 자율규제 권장사항에 대한 의견</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li> </ul>

### 제 3 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1. 디지털유산의 범위

##### 가. 디지털유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항

온라인정보 중 비공개성을 갖는 정보는 이용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제3자’<sup>93)</sup>로의 승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권한 부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주로 문제되는 사항은 전자우편의 내용이나 비공개 게시글 등 비공개 온라인정보와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의 온라인 계정이다.

이용자의 사망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① 사망한 이용자의 온라인 계정 자체를

---

93) ‘제3자’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후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유산에 대하여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권한 있는 ‘제3자’의 범위 또한 본 설문의 의견 조사 대상이다.

제공하는 방법, ② 계정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되 이용자가 사용하던 온라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방법, ③ 역시 계정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가 보유하고 있는 계정 정보의 목록만을 제공하여 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④ 계정을 직접 제공하지 않되 이용자가 생전에 해당 계정으로 작성한 온라인정보의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백업(back-up)하여 제공하는 방법 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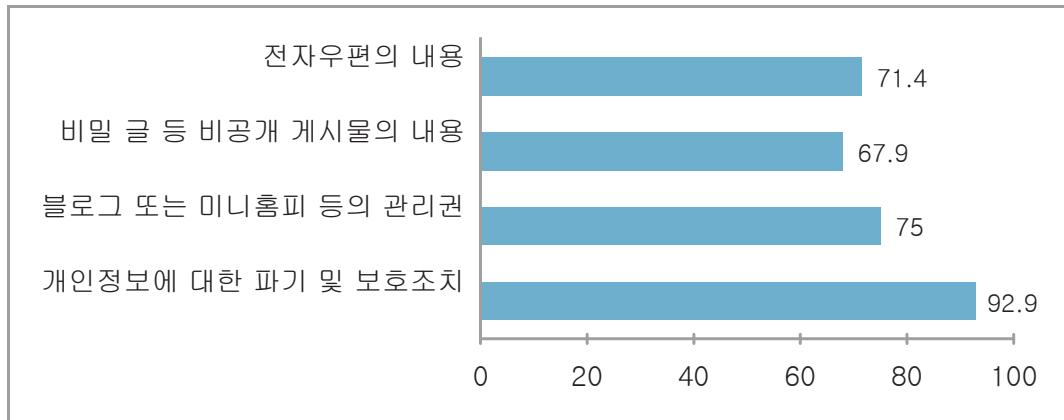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온라인정보의 관리권한이나 내용의 백업본을 제공하는 경우(②~④)와 온라인 계정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①)를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온라인정보의 관리권한이나 내용의 백업본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전자우편의 내용’, ‘비밀 글 등 비공개 게시물의 내용’,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관리권’,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및 보호조치’의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제3자’가 디지털유산의 처리나 관리권한을 요청할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3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92.9%가 동의한다고 답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 등의 관리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데에 75.0%, ‘전자우편의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응답은 71.4% 순이었고, ‘비밀 글 등 비공개 게시물의 내용’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67.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림 2] 디지털유산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단위: %)



이상의 네 가지 항목 이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제3자’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뿐 아니라 위 네 가지 항목의 처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집할 수 있었다.

첫째, 위 네 가지 이외에 ‘제3자’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이용자의 설정값, 쪽지의 내용,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폐쇄 요청권, 개인적 성격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리권, 전자우편 계정 유지 청구권 등이 제안되었다.

사자가 생전에 남긴 편집물(음악 재생 순서, 자동화 세팅 등). 인터넷 서비스가 개인맞춤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개인에게 최적화되어 있었던 설정값 등에 대해서도 디지털유산으로써 요청할 수 있다 고 봄. 예를 들어 북마크 등. (법학교수)<sup>94)</sup>

다음, 네이버 등의 카페/커뮤니티 소유자의 관리권 - 단, 웬클립, 동창회, 친목모임 등 실제로는 집단 총유의 카페/커뮤니티를 개인이

94) 팔호 안은 응답자의 소속 집단이다.

대신 개설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퍼스널리티 중심의 카페로서의 특성이 강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임. (시민단체 활동가)

이미 수신 또는 발신된 전자우편의 내용만이 아니라 전자우편의 계정 유지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이용자의 사망을 모르는 지인이 보내는 전자우편을 수신하고 처리할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둘째, 위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응답으로서, 비공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의견, ‘제3자’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먼저 전자우편의 내용이나 비공개 게시글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유산으로서 상속대상이 되는 오프라인상의 편지, 일기 등과 온라인상의 전자우편, 비공개 게시글 등을 그 함의가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기준의 편지와는 달리, 전자우편은 일상적인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자우편(혹은 비밀글)이 사후에 제3자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 생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다음으로 정보 또는 권한 제공을 요청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공가능한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아니라면 비공개 게시글 등 비공개 온라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3자’가 정당한 상속인이라면 사자의 모든 유산에 관한 처리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범위에는 타인의 웹사이트에 남긴 사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포함된다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

제3자가 사자의 정당한 상속인이라면(법정상속순위 또는 유언에 의해서든) 사자의 모든 유산에 관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타인의 웹사이트(블로그, 카페, 기타 여하한 경우)라도 사자의 저작물이면(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타인의 권리가 있는 경우 제외) 모두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이와 같은 입장은 ‘제3자’에게 승계가능한 디지털유산의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 나. ‘제3자’의 권한 제한 범위 및 방식

온라인 계정 자체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계정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사자의 계정을 사용하여 마치 이용자 본인인 것처럼 전자우편이나 게시글을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정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사자의 추모, 기록 보관 및 삭제 등 부분적인 권한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다음, 계정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권한 제한이 어떠한 범위 또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의 답변을 ① 계정 이용자가 ‘제3자’임을 표시하는 방법, ② ‘제3자’의 권한범위, ③ ‘제3자’의 권한 제한의 방식으로 나누어보았다.

첫째, 현재의 계정 이용자가 사망한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임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제안이 있었다. 먼저 계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되, 아이디 표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사자의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새로운 계정을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자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사자의 계정정보를 제공하되 아이디에 상속인임을 표시하여 제공함으로써 혼동을 피하는 방안, 사자의 계정을 명의변경 방식으로 ‘제3자’

에게 승계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자의 디지털 계정 이용권을 제3자에게 이용권을 승계(명의 변경)해주는 방식도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용권 승계 전에 메일 등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사전에 ISP가 삭제한 이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ISP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이용권을 승계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ISP 담당자)

이상의 의견이 ‘제3자’로 하여금 사망한 이용자와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의견은 아이디는 본래의 이용자의 아이디를 그대로 두되, 게시글에 이용자의 사망사실을 표기하는 것이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의 관리권한을 부여할 때 모든 신규 게시글에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하자는 제안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제3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목적의 제한, 소극적·방어적 이용에 한정, 백업권한만을 부여, 공개게시물의 열람·삭제권한만 부여, 접속 횟수 제한, 게시물이나 전자우편의 신규 작성 금지, 게시물이나 전자우편의 신규 작성 횟수의 제한 등 다양한 답변이 제시되어, 응답자마다 ‘제3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권한의 정도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열람, 보관, 삭제 권한만을 주는 것이 좋으며, 다만 일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자명의로 메일을 전송하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주소록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사실을 알린다는 등). 또한, 명시적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열람권마저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필요할 듯합니다(예를 들어 비공개 옵션에 상속마저 되지 않는 옵션을 포함한다든지 등). (법조인)

현재 법률상 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유산 분쟁시 근거, 기록물 보존 등의 필요를 고려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의 일방적인 수정이나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음. 열람 및 다운로드의 허용으로 충분하다고 보임. 단, 사자의 기록이 제3자의 명예 등에 미치는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절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시민단체 활동가)

유족의 추모의 심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련 접속 권한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되 관련 계정의 사기 등에 의한 부정한 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글쓰기 사용은 사망사실 및 감사의 글의 1회 게재 외에는 금해야 할 것이다. 위 권리의 제한은 관련 사이트의 가입 시의 계약 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입자에게 사전 고지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법학교수)

셋째, ‘제3자’의 권한 제한 방식으로서, 이용자의 상속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권한 범위의 제한을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 권리를 가진 상속인이 ‘제3자’와 협의하거나 ‘제3자’가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권한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협의 사항에 맞추어 권한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자의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상속인외)에게 제공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제3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구체화할 수 없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모든 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일차적으로 상속인이 모든 디지털유산에 대한 상속을 하고 후에 사자를 추모하거나 기록을 보존하는 등의 일정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은 상속인과 관리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 가능토록 하며 이 경우 ISP는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더불어 ‘제3자’에 대한 권한 제공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의 운영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제3자’의 권한에 대한 방안 마련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 2. ‘제3자’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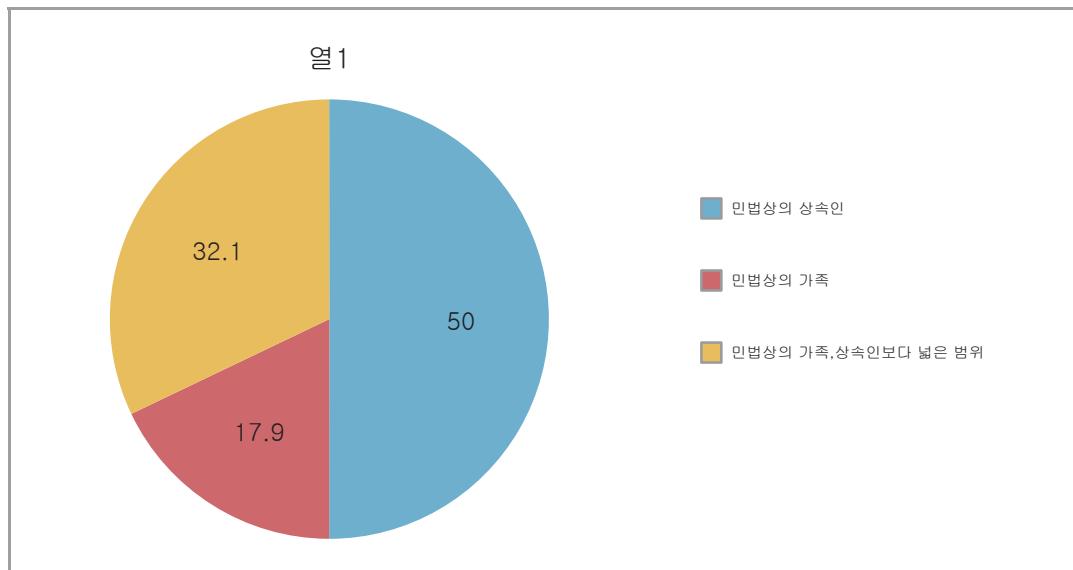
### 가. 디지털유산의 관리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3건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디지털유산에 대한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서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민법상의 ‘상속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고자 하는 안이 있는가 하면, 후견인이나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를 포함하여 ‘제3자’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설정하고자 하는 안도 존재한다. 현행 제안들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 다음 명목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들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3자’의 범위를 질문하였다. 선택지는 ‘민법상의 상속인’, ‘민법상의 가족’, ‘민법상의 가족·상속인보다 넓은 범위’의 셋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민법상의 상속인’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50.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민법상의 상속인, 가족보다 넓은 범위’가 32.1%로 그 뒤를 이었다. ‘민법상의 가족’은 17.9%로 가장 적었다.

[그림 3] 디지털유산의 관리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단위: %)



#### 나. 민법상 가족, 상속인으로 제한하는 이유

디지털유산에 대한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를 이용자의 가족 또는 상속인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먼저 ‘민법상의 상속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50.0%)은 주로 ① 디지털유산을 일반 상속재산과 다르게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② 상속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점을 들었다.

첫째, 디지털유산도 ‘상속’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민법상 상속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속의 순위에 따라 최선순위 상속인에게 한정되어야 한다거나,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면 이용자가 사전에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 ‘제3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일단 사자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모든 사자의 권리의무가 그의 법적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 대한 사항을 도외시하고 굳이 다른 제3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줄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제3자가 사자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자가 생전에 특별히 관리에 대해 위임한 것이 아닌 이상은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근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에 대한 추모나 기록의 관리는 굳이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보다 사자와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과 그 외 제3자의 관계에서 조정할 사항이지 굳이 그 범위를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우리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하므로 디지털유산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범위에서 이루어져 한다.  
(법학교수)

민법상 상속인은 망자와 인격동일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법학교수)

둘째, 상속인으로 제한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유산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제3자’의 권한 증빙의 어려움 등이 지적된다. 먼저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지적한 의견이다.

해당 디지털(정보) 유산에 재산적 가치(이익)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민법상의 상속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음. (ISP 담당자)

다음은 권한 증빙의 문제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유산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요청자가 권한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권한을 증명하는 것

이 수월하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한 권한을 제공할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때문에 추후에 분쟁의 소지도 있어 상속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디지털유산의 관리 요청 및 이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한데, 그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 자료가 없을 것 같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처리가 힘든 부분이 있음. (ISP 담당자)

디지털유산에 대한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로 ‘민법상의 가족’을 선택한 응답자들(17.9%)은 디지털유산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상속 가능한 재산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디지털유산을 재산의 상속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유산은 사자의 유족들에게 있어서 추모의 의미가 있지 이해관계가 수반하는 민법상의 재산권과는 의미가 다르다 할 것이다. 다만, 사자의 계정은 현대와 같이 디지털 기반의 신용 사회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산권적 가치가 없다고 해도 그 사후 관리자의 범위 및 권한은 제한해야 할 것이다. (법학교수)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응답자들은 재산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이외의 사항을 구분하고자 한다.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제한하되, 정보에 대해서는 가족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하자는 의견, 유족의 추모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디지털유산의 특성을 들어, 사생활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가족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 “생전의 생활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그 밀접성을 고려하여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다. 민법상 가족, 상속인 이외에 포함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디지털유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이용자의 가족, 상속인보다 넓은 범위로 하여야 한다고 본 응답자들(32.1%)에게 가족, 상속인 이외에 누가 ‘제3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이용자와의 관계, 친밀성 등을 고려한 답변으로 ‘사실 혼 배우자’, ‘애인’, ‘후순위 상속권자’, ‘친구나 지인’, ‘후견인’ 등이 제안되었다.

후견인,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자 등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든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임. 특히 가족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족이 컴퓨터에 능숙하지 아니한 자 등인 경우)에는 현재 미니홈피 등의 비밀번호를 아는 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도 하므로 제3자의 범위는 선택의 폭을 넓혀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관계기관 전문가)

사실혼 배우자,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는 포함되어도 좋을 듯 하며, 만일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열람권만이라도 좀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인정해줘야 할 듯합니다(사실혼 배우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애인 등의 경우 등). 또한 후순위 상속권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은 후순위 상속권자이지만 열람권은 인정한다든가 등). (법조인)

민법상의 가족 외에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고. 먼저 민법상의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인척을 포함하게 되는데, 디지털유산은 이용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관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

므로 제외되어야 함. 반면,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법조인)

이용자의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본다면, 혈족이나 인척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민법상의 상속인 개념으로 제한할 경우 이용자와의 친밀성의 정도를 판단에 개입시킬 여지가 없으므로 ‘상속인’은 디지털유산의 관리권을 부여하기에 적절한 범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제3자’의 범위를 이용자의 가족, 상속인보다 넓은 범위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실생활에서의 관계,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제 위에 서 있다고 하겠다.

### 3.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

#### 가.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의 우선순위

이용자의 사망 후에 남겨진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있어서 어떠한 법익을 고려할 것인지를 문제된다. 이에는 이용자의 이해관계와 디지털유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제3자’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이해관계도 포함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지로 ‘이용자의 이해관계’, ‘제3자’의 이해관계’, ‘사회적 이해관계’, ‘기타’를 나열하고,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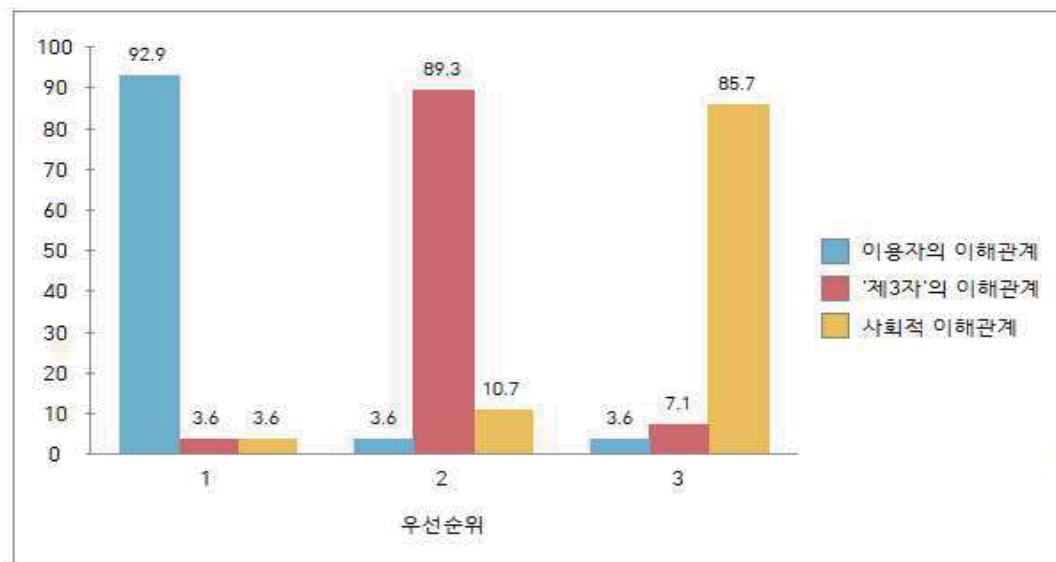
응답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각 선택지에 대하여 몇 가지의 예시를 제공하였다. 이용자의 이해관계로는 ‘자기정보결정권, 개인정보보호 등’을, ‘제3자’의 이해관계로는 ‘상속, 경제적 이해, 사망자에 대한 추모 등’을, 사회적 이해관계로는 ‘역사적 · 사회적 · 문화적 가치의 보존, 미래의 집단적 창의성을 위한 토대의 보존, 인터넷 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을 예시하였다.

마지막 선택지인 ‘기타’는 세 가지 이해관계 이외의 사항으로 응답자가 생각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포함하여 네 가지 이해관계의 순서를 정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유의미한 응답이 없어 최종분석에서는 ‘기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이해관계의 순서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92.9%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1순위로 꼽았다. “제3자”의 이해관계 및 ‘사회적 이해관계’를 1순위로 지정한 응답은 각 3.6%(1명)으로, 응답자들은 무엇보다도 이용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함을 보여준다. “제3자”의 이해관계 및 ‘사회적 이해관계’를 비교해보면, 2순위로 “제3자”의 이해관계를 선택한 응답은 89.3%, ‘사회적 이해관계’를 선택한 응답은 10.7%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응답자들은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있어 ‘이용자의 이해관계’, “제3자”의 이해관계’, ‘사회적 이해관계’ 순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의 우선순위

(단위: %)



#### 나. ‘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한 평가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들 중 이용자의 이해관계나 ‘제3자’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디지털유산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 등과 같은 사회적 이해관계 또한 중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견해가 어떠한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각 이해관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에서 사회적 이해관계를 1순위로 지목(3.6%)한 한 응답자는 디지털유산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들어 사회적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용자 개인이 작성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기록물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제3자’가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자의 디지털유산의 경우 기록물 보존이라는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우선시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가족이나 특별한 위임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일방적 삭제 등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후 몇 년간’ 등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 단, 생존한 제3자의 명예 등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것. (시민단체)

사회적 이해관계를 2순위로 답한 응답자(7.1%) 중 한 명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이용자의 인격형성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제3자’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망자의 사회적 이해관계는 망자의 인격형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재산관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3자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법학교수)

사회적 이해관계를 3순위로 둔 응답자(85.7%)들은 이용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사회적 이해관계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 많았다. 디지털유산은 개인의 창작물이어서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고, 반면 사회적 이해관계는 개념이 모호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 정보의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이용자가 사후에 공개 될 것을 명시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이해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지적 등이 있다.

한 개인의 기록이 사회에서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사회가 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남겨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라는 없다고 봄. 그에 반하여 제3자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은 정당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사자의 디지털 유산을 둘러싸고 관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 보임. (법학교수)

반면 우선순위로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최하위 순위로 두면서도 사회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례도 많았다. ① 앞서 디지털유산을 개인의 창작물로 보았던 의견과는 반대로,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디지털유산은 “동시대인의 공동 창작물”(관계기관 전문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입장, ② 보존가치가 있는 디지털유산이 관리되지 못할 경우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무형 자산의 손실이 발생”(ISP 담당자)할 수 있다는 입장, ③ 공인인 경우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좀더 부각될 수 있다는 입장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이해관계는 유명인(정치인, 예술인 등)의 경우 부각될 수 있을 것임. 디지털유산임을 떠나서 개인의 일기장이나 비망록 등 이용자의 사망 후에 남겨진 기록들은 후세에 공개됨으로써 역사적인 가치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off-line에서 남겨진 유산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관계기관 전문가)

이상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문가들은 이용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에 비하여 사회적 이해관

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별 디지털유산의 성질이나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디지털유산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중시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4. 이용자의 사전조치의 종류

##### 가. 이용자의 생전 의사결정 표현 방법

디지털유산의 처리는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그 방법을 지정하여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고 사후 이에 따라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생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였다.

개방형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결과, 회원가입시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의사를 밝히지 않을 자유도 동시에 보장하여야 하며, 가입시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 이후에 언제든지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해 의사를 설정, 변경, 폐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용자의 의사 변경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설정 이후 5년에 한 번씩 의사를 재확인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약관의 동의와 더불어 별도의 페이지에서 디지털유산에 관한 처리문제를 동의 받음 (보험가입시, 보험금의 수령자를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함.)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고객의 마이페이지에서 “디지털유산함”이라는 메뉴를 설정하여 유산으로 남길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선별적으로 담을 수 있게 함. 물론 인터넷 유언장 등을 작성할 수 있게 함. (작

성 없이 죽는 경우, 일정기간 본인의 접속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일괄하여 삭제할 수 있을 것임). (법학교수)

ISP의 특정 서비스를 가입하는 시점에 의사결정을 받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며, 기존 사용자의 경우 공지를 통해 필요한 사용자에 한하여 의사를 결정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ISP 담당자)

가입시 혹은 가입 이후 언제든지 자신의 사후에 디지털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별도의 메뉴를 두어 사용자가 언제든지 이를 작성, 수정, 폐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법조인)

의사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특기할 만한 의견은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보의 수집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가장 정확한 신원확인 방법을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임.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신원확인 방법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방식이나, 이 신원확인방법도 공인인증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넘겨주어 대신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신원확인 수단을 같이 요구하여 반드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됨. 둘째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휴대폰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 등을 사전에 접수받아 교차 적용함으로써 반드시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됨. 본 의사결정의 생전 수집방법은 “유언”수준은 아니나 이에 준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함. (관계기관 전문가)

이와 유사한 의견으로,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만 14

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 및 동의를 하면 된다고 한다.

그 외에 전자우편이나 게시글 작성시 공개 여부를 정하는 옵션에서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

#### 나. 에스크로 서비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제도적 지원

디지털유산의 사후 처리에 대하여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 방법으로, 사후 온라인 정보 접근권한 등의 정보를 임치해놓을 수 있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의 제도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활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에스크로 서비스의 사례로 미국의 Entrustet의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예시한 뒤, 이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요구되는 제도적 지원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기술적 지원,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응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용자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ISP업체들이 제3자의 디지털유산 제공 요청 시에 에스크로 서비스에 등재된 이용자의 결정사항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무료 API의 제공. (ISP 담당자)

(일종의 인터넷 유언장 서비스의 확장으로,) 사자가 생전에 미리 정해둔 방법대로 디지털유산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반드시 유언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요청될 것임. 또한 어떤 사람이 사망하였음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자가 사전에 남겨둔 에스크로 서

비스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손쉽게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조력할 필요가 있으며, 당해 문서는 전자서명을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전송하도록 함. (법학교수)

이외에도 당해 제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등과 상호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고시 면책하는 조항의 마련, 이용자의 사후 이용자가 사전에 제시한 의사와 유족의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의 마련, 유언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 5. ‘제3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처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디지털유산에 대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논의되지만, 사망 이외에도 이용자가 온라인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중 박대해의원안은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의 실종 또는 의식불명시’에도 본인의 미니홈피 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의 사망뿐 아니라 실종 또는 의식불명과 같이 사망과 유사하게 이용자의 부재를 초래하는 상황에도 ‘제3자’에게 디지털유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의견은 첫째, 사망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 둘째,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 셋째,

제한적 권한만을 인정하자는 견해, 넷째,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권한 부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었다.

첫째, 사망 이외에 실종, 의식불명과 같은 사유로 디지털유산의 관리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디지털유산을 상속재산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실종이나 의식 불명의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이용자 본인과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실종이나 의식불명은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며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법규가 구체적이면 좋겠지만, 사망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의식불명시 등을 세분화한다면, 실종시, 연락두절시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의식불명이 된 이용자가 의식을 되찾고 나서 항의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실종이나 연락 두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 전문가)

둘째, 사망으로 의제하는 민법규정을 준용하자는 의견이다. 민법상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시에는 사망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이거나 의식불명 상태인 때에는 사망으로 볼 수 없어 ‘제3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 하겠다.

이용자가 사전에 실종 또는 의식불명을 대비하여 제3자의 관리권을 인정하였다면 이를 인정해도 무방함.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실종선고시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3자의 처리 신청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나, 실종선고 전의 단순 실종이나 의식불명시에는 민법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처리 신청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법조인)

이용자의 부재시는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민법 제22조~제26조)과 실종시의 규정(민법 제27조~제29조)의 적용여부를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디지털유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민법상 일반규정보다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특별법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의식불명이란 이용자가 여전히 권리의 주체로서 능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셋째, ‘제3자’에게 권한부여를 인정하되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민법규정을 준용하자는 의견과 유사하게, 실종선고는 사망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나 실종선고를 받기 전 단계의 실종이거나 의식불명시에는 ‘제3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제한하여,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권한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종이나 의식불명시에는 현상유지만을 위한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다만, 실종선고를 받게 된 경우에는 현상유지만을 위한 관리권한 부여만으로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법상의 실종선고의 효력에 맞춰 사망으로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판단함. (관계기관 전문가)

넷째,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하여 인정하자는 견해로, 이용자가 실종이나 의식불명을 대비하여 미리 선택을 하였거나 사전에 관리권한을 부여할 ‘제3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 “긴급한 영업상의 필요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시민단체 활동가)에 ‘제3자’의 권한을 허용하도록 제한하자는 의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실종, 의식불명 이외에 사망과 유사한 상황으로서, 이용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가족에게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거나, 가족이 없을 때에는 국가로 귀

속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6.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율 방식

### 가. 입법 및 자율규제의 범위

디지털유산의 범위,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율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규율 내용을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으로 구분하여 보면, 먼저 ‘기본적 사항’에는 디지털유산의 범위,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디지털유산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 외의 사항들, 예컨대 디지털유산의 제공에 관한 ‘제3자’의 요청절차와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유산의 범위, 정보의 성격에 따른 제공절차 및 제공방법, 디지털유산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여부 등을 ‘세부 필요사항’을 분류하여 본다면, 이 두 가지 사항의 규율에는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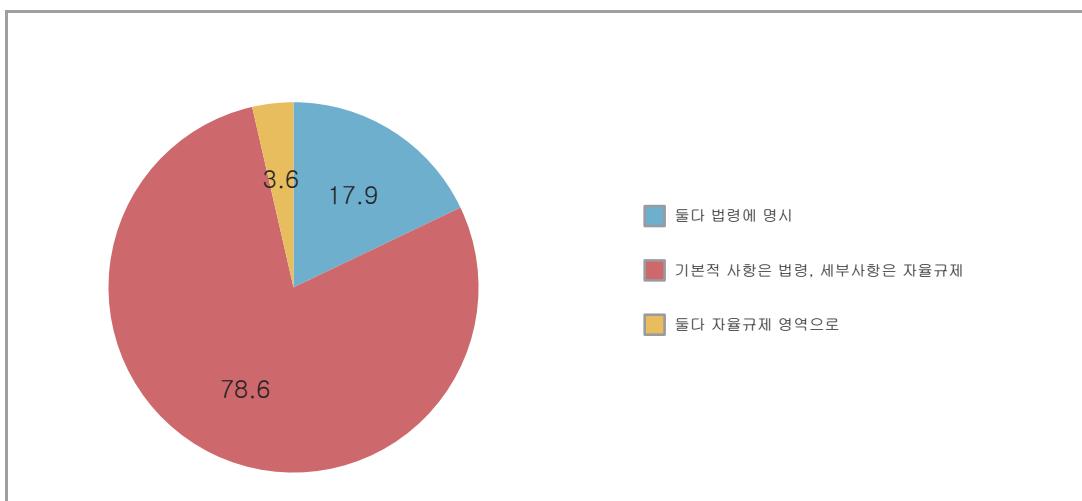
첫째, 기본적 사항과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법령에 명시하는 방법, 둘째, 모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영역으로 두는 방법, 셋째, 기본적 사항만 법령에 명시하고 세부 필요사항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하는 방법이다. 그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응답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자율규제 영역을 넓히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자율규제 영역을 넓히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이나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처리방법을 정할 여지가 넓어진다는 점,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는 규제 내용에 따라 법률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이 무효로 되는 경우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 사항만 법에 명시, 세부 필요사항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이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의 비율이 7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법에 명시’로 17.9%를 차지하였다.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룸’은 3.6%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본적 사항을 법령으로 다루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필요사항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법령에서 다루자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입법 및 자율규제의 범위

(단위: %)



전체 표본의 크기가 적어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규율방식에 대한 응답에서는 상대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좀더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조인 집단은 42.9%가 기본적 사항 및 세부사항을 모두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관계기관 전문가 및 ISP 담당자 집단에서는 이를 선택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관계기관 전문가 집단이 인터넷서비스 관련 연구자 및 실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세부 필요사항의

규율에 있어서는 자율적 수행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6] 집단별 입법 및 자율규제의 범위

(단위: %, n=28)

구 분	둘다 법령에 명시	기본적 사항은 법령, 세부사항은 자율규제	둘다 자율규제 영역으로
법조인	42.9	57.1	0.0
관계기관 전문가	0.0	100.0	0.0
법학교수	11.1	88.9	0.0
ISP 담당자	0.0	80.0	20.0
시민단체 활동가	25.0	75.0	0.0
전 체	17.9	78.6	3.6

응답자들에게 각 선택의 이유를 질문하였다. 먼저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법에 명시’를 선택한 응답자들(17.9%) 중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의 비밀관성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운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많았다. 예컨대 디지털유산은 유형의 재산이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자율영역 위임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는 견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약관방식에 의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므로 이용자는 선택의 폭이 좁고 약관에 구속되므로, 인격권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는 법률화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디지털유산이라는 것이 기술 발전에 의한 새로운 개념이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부 필요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디지털유산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나 변경 내용을 법률 개정 없이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3자의 관리권은 일종의 상속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법에 규정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보장할 필요 있음. 자율규제 영역으로 둘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마다 핵심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법조인)

무엇이 기본적 사항이고 무엇이 세부 필요사항인지는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원칙론적인 접근만이 가능할 것인데, 디지털유산이 유형의 재산이 아니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쉽게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이들은 주로 대기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자율의 영역에 넘기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조인)

한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세부 필요사항을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면서, ‘제3자’의 권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본적 사항 및 세부사항까지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세부 사항을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할 경우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임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사업자에게 지워지게 됨. 이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증가할 것임. 따라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카페/커뮤니티/팀블로그 등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커뮤니티 구성원을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정 방식을 결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 할 수 있을 것. (시민단체 활동가)

다음으로 ‘기본적 사항만 법에 명시, 세부 필요사항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이 더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들(78.6%)이 제시한 이유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급속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다. 디지털유산의 개념은 기술변화에 따라 유동적 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으로는 그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디지털유산의 개념 및 바운더리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모든 사항을 법령에 명시 할 경우 시대적 트렌드 변화나 기술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없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항만 법에 명시하고 세부 필요사항은 사업자 자율규제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기관 전문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를 모두 법으로 명시하려고 한다면, 추후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개정을 거듭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 (법학교수)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이다. 사업자마다 환경과 규모, 서비스의 내용,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유산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사업자별 특성에 부합하는 디지털유산의 처리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자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다.

인터넷 사업자별로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디지털유산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법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모두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함. 이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제공 가능하다는 대원칙만 법에 명시하고 세부 필요사항은 인터넷사업자별로 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ISP 담당자)

두 가지 주요 이유 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디지털유산의 성질의 차이, 규제 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차이 등이 있었다. 먼저 디지털유산의 성질에 따른 차이에 대한 지적으로서, 인격적인 사항과 재산적인 사항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유산의 경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격권적 성격 이외에도 재산적 성격 또한 보유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격권에 대한 것은 망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적 차원에서 망자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법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밖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하는 한 시장의 자율규제에 따름이 합리적. (법학교수)

다음은 규제 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지적한 의견이다. 규제 내용에 따라 반드시 사업자의 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령에 둘으로써 규제의 기본 취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모두 법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에 규정된 사항만을 준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므로 디지털유산의 처리를 위한 법의 기본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자율규제만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자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소비자의 이익에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기본적인 사항을 법에 명시하여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관계기관 전문가)

마지막으로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룸’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3.6%)는 디지털유산이 인터넷정보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다양한 인터넷정보서비스의 일종임을 지적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대상 디지털(정보) 유산은 ISP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내에 존재하며,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ISP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약정(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인 바, 법에 의한 일률적 규제형식이 아닌, 서비스 운영을 고려한 ISP 사업자와 이용자 의사가 반영되는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함.  
(ISP 담당자)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문항에서는 디지털유산의 범위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기본적 필요사항과 세부사항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였다. 이처럼 문항에서 미리 제시한 사항 이외에 법령 또는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추가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더 있는지 질문하였다.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한 결과, 법령에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유산의 범위, 이용자가 생전에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승계받을 ‘제3자’가 없는 디지털 정보의 처리 방법 등이 지적되었다.

표준약관과 같이 세부 필요사항에 대한 일응의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고(다만 강제력은 없어야), 세부 필요사항에 정함이 없는 경우 처리방법(사망사실이 확인되고 제3자 제공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자료가 폐기되는지 여부)을 법령에 규정할 기본적 사항에 규정할 필요성 있어 보임. (법조인)

특히 사전에 ‘제3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데, 디지털유산은 민법상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과는 다른 차원의 기술적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이 결여된 경우 특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한 있는 민법상의 상속인이나 가족, 사전에 지정된 ‘제3자’ 등이 디지털유산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수령의

방법을 기술적 차원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상대방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또한 디지털유산의 처리 방법 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응답자들의 제안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분쟁조정기관 설치 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 ‘제3자’의 권한 보호, 권한 있는 ‘제3자’가 다수인 경우의 조정 방식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제3자가 다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 방식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디지털유산에 대한 것들은 유족이나 친지 등간에 망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 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3자 지정 등에 대해 과실 이 있었던 경우, 혹은 디지털유산의 손실이나 훼손 등의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전문가)

#### 나. 디지털유산의 범위에 관한 자율규제 권장사항에 대한 의견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경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 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개별 사업자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사업장의 규모 등 상황에 부합하도록 안의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할 여지가 있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통된 안으로써 다양한 사업장 에 널리 적용될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규제 권고안으로 적절한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디지털유산의 범위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을 참고하여 자료로 제시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디지털유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의 내용을 각각 정리하여 응답자들에게 가

안으로서 제시하였다.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① 디지털유산의 존재 여부(사망자의 계정 존부, 게시글 등의 컨텐츠 존부 등)에 대한 조회 서비스 제공, ② 전자우편 정보 제공, ③ 공개·비공개 게시물 등 컨텐츠 복사를 제공하며, ④ 미니홈피, 개인적 카페, 블로그, SNS 등 공개된 개인용 웹페이지는 고인을 추모하는 용도로만 존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는 ① 사망한 회원의 계정정보, ② 사망한 회원의 계정이용권, ③ 카페 운영자의 지위 등, ④ 인적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로그정보, 위치정보 등)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로 하여금 이상의 내용 중에서 미흡하거나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였다.

개방형으로 응답을 얻은 결과 전자우편 정보, 비공개 게시물의 내용, 계정정보 및 계정이용권, 카페 운영자의 지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문항에 제시한 자료 중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된 전자우편 정보 및 비공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거나 제한된 범위에서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자우편은 사망한 이용자 이외에 상대방이 존재하며 비공개 게시글 또한 상대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전자우편의 경우, 메일의 수발신인 중에서 사자 외의 다른 인물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이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해야 함. (ISP 담당자)

전자 우편 정보, 비공개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제3자의 요청에 따르기 이전에 이러한 컨텐츠의 상속에 대한 고인의 의사를 먼저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전자우편의 경우 이용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의 수신자인 제3자의 정보가 상속자에게 공유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SP 담당자)

디지털유산 중에 사망자가 남긴 게시물 중에서, 비밀글에 관한 부분까지 디지털유산을 상속받는 자(이해관계자)가 열람해서는 곤란함. 사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자가 생전 남긴 상대방이 있는 비밀글을 디지털유산 상속자가 열람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봄. (법학 교수)

전자우편 및 비공개 게시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것이다. 이용자가 본인의 사후에 전자우편이나 비공개 게시글이 ‘제3자’에게 제공될 것을 예상한다면 스스로 표현을 제약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메일이나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사후에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생전의 이용자의 이용행위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추후에 있을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여, 현실의 이용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메일이나 비공개 게시물을 제공하는 문제는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또한 개인적 카페는 고인을 추모하는 용도로만 존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의 내용이었으나, 이와 같은 제한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페의 경우 개인적 목적으로 하더라도 회원수가 많은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고인을 추모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인)

다음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로 제시하였던 내용 중 사망한 회원의 계정정보 및 계정이용권, 카페 운영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승계를 전면 금지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정 및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사망한 회원의 계정정보와 계정이용권의 경우 법적 제도만 준비가 된다면 이용권 승계를 통해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SP 담당자)

정리하여 보면, 전자우편 정보나 비공개 게시물과 같이 정보의 비공개성이 강하며 이용자 외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정보는 상대방의 권리 침해 가능성,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계정정보, 계정이용권, 카페 운영자의 지위는 일괄적으로 승계를 금지하기보다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라 하겠다.

#### 다.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에 관한 자율규제 권장사항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를 자율규제에 맡기는 경우 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자율규제 권고안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① ‘제3자’의 신청, ② 정보의 성격에 따른 제공절차 및 제공방법, ③ ‘제3자’의 권한범위 및 사망사실의 표기의 내용의 가안을 응답자들에게 판단 자료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제3자’의 신청 방법으로서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 권한 있는 ‘제3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신청할 것, 단독신청시에는 다른 권한 있는 ‘제3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의 성격에 따른 제공절차 및 제공방법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권한만을 부여하거나 백업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셋

째, ‘제3자’의 권한범위 및 사망 사실의 표기로서, 사망한 이용자가 작성한 컨텐츠의 내용을 ‘제3자’가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수 있다는 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컨텐츠에 계정 소유주의 사망 사실을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제시한 뒤 응답자로 하여금 그 내용 중에서 미흡하거나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여 줄 것을 개방형 문항으로 요청하였다.

그 결과 ① 권한 있는 ‘제3자’가 다수인 경우의 처리, ② ‘제3자’에 대한 통제,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 고려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다.

첫째, 권한 있는 ‘제3자’가 다수인 경우의 처리에 대한 응답이다. 먼저 권한 있는 ‘제3자’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제3자’의 권한을 제한할 경우에는 다른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제3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 다른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모두 받게 하는 것은 실제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법조인)

제3자가 다수인데 단독신청하는 경우 꼭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다. 즉 열람의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인)

또한 다음과 같이 권한 있는 자의 동의 대신 순위를 정하거나 가족회의 등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권한 있는 제3자가 다수인 경우 순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거나 가족회의 등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통해 제3자의 동의를 획득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에는 다양한 방

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사항의 명확화가 본 디지털유산 처리에 있어 핵심쟁점으로 부각된다고 판단됨. 그렇지 않은 경우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임. (관계기관 전문가)

둘째, ‘제3자’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응답으로, ‘제3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권한을 통제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 ‘제3자’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응답자들에게 자료로 제시한 가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컨텐츠에 계정 소유주의 사망 사실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이 권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제3자’에 의하여 디지털유산이 관리되고 있음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다.

‘제3자’의 권한범위에 있어서는 내용 변경을 제한하는 조치 이외에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3자’에 의해 사자(死者)의 디지털유산이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그로 인해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오해소지를 없앨 수 있고, 악용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법학교수)

그러나 ‘제3자’의 관리 여부에 대한 공시 권고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유산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제3자’를 적절히 통제하면 충분한데 ‘제3자’가 디지털유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의 공시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컨텐츠에 계정 소유주의 사망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하고 있는 정보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의 정보인지, 사자의 정보인지를 구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유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관 및 제3자의 관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법학교수)

한편 ‘제3자’에 대한 통제는 기술적 한계 범위 내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제3자’의 접근권한을 세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권한의 조정보다는 정보의 복사 제공 방식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다.

제3자의 권한 중 컨텐츠의 내용 변경은 못하나 접근은 가능하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ISP가 준비하기 어려운 기능입니다. 사자의 계정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고, 그 밖의 계정으로 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요청에는 자료의 성격에 무관하게 모두 자료를 백업하여 CD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SP 담당자)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 고려에 대한 의견이다. 사업자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업의 규모, 기술적 한계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개별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자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제3자’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책을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수많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는데, 기술적 구현이 힘든 (아마도 주로 소규모, 혹은 해외) 사업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

지, 상세한 접근 제한 등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힘들어 계정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했을 때 이를 제3자가 남용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정리하여 보면, 첫째, 권한 있는 ‘제3자’가 다수이고 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외의 권한 있는 ‘제3자’들의 동의를 전부 받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경우도 있어 좀더 간소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둘째, ‘제3자’의 통제와 관련하여, ‘제3자’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도 여전히 ‘제3자’를 통제할 필요성은 존재하며, 혼란을 피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제3자’의 통제의 한계로서 기술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 문제로, 사업자마다 서비스, 사업의 규모, 기술적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다양성을 고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 7.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마지막으로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개방형 문항으로 요청하였다.

디지털유산의 범위와 가치의 문제에서부터 ‘제3자’에 대한 통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 방식까지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주요한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용자 가 공인인 경우 예외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디지털유산의 사회적 가

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 반대로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고 관리가 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본 설문에서는 계정정보나 전자우편, 공개·비공개 게시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개인 홈페이지, 카페 운영자의 지위 등을 주로 논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이외의 사항으로서 법적 취급이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디지털유산은 사람의 활동과 기술의 발달로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구체화하는 표현들(계정 정보,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환경을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도 ISP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사업자가 관리하는 상거래기록이나 금융거래기록 또는 여타 다른 디지털 형태의 정보에 대한 문제도 그 처리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포털서비스가 아니라 단순히 웹호스팅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논의가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조인)

디지털유산을 관리하는 ‘제3자’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가 사망한 이용자의 계정정보로 접속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3자’에 대한 통제 방식으로 권한범위의 제한 이외의 몇몇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다음의 의견은 ‘제3자’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및 사용정지권을 제안하고 있다.

사후 인격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에서 제3자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모니터링은 정보제공사업자가

하되, 이에 대한 누설 등에 대비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벌도 함께 규정함이 좋을 듯합니다. 사전적으로 직접적 사용정지권을 정보제공사업자에게 인정함이 사후적인 조치인 손배책임과 경합하지도 않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학교수)

제3자에게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더하여 ‘제3자’의 사용내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며, ‘제3자’가 권한을 남용할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판단 하에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 외의 의견으로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의 문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 문제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 사이트 계정(예를 들어, facebook, gmail, yahoo.com)에 대해서 국내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가 의문임. 이는 결국 국제사법과 외국 법의 집행과 승인문제가 발생함. (법학교수)

외국 사업자의 전자우편, SNS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디지털유산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의 규율이 가능할 것인지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은 앞서 지적된 바 있는데, 다음의 의견은 다양성에 대한 지적을 넘어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기준 설정, 단계적인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하고 있다.

현재 각 ISP 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정책적, 기술적으로 제공 가능한 범위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 규모 ISP의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유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영세한 ISP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제공 가능한 수단을 간소화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방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현재 대부분의 포털로 제3자의 디지털유산 요청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무조건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기보다 실시가 가능한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ISP 담당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마다 편차가 심하여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용 또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현 시점에서 고려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제 4 절 소 결

이상과 같이 이용자의 사후에 법적 취급이 문제되는 디지털유산의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유산의 관리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 이용자가 생전에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의 종류, ‘제3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처리 신청이 가능한 이용자의 상태,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율 방식의 여섯 범주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이용자 사후의 디지털유산의 범위에 대한 조사 결과로서, 디지털유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온라인정보 및 관리권한의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및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92.9%)가 동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 등의 관리권’(75.0%), ‘전자우편의 내용’(71.4%), ‘비밀 글 등 비공개 게시물의 내용’(6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제3자’가 요청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북마크 등 개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설정값, 음악 재생 순서,

자동화 세팅 등의 편집물, 쪽지의 내용, 블로그·홈페이지 등의 폐쇄 요청권, 개인적 성격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리권, 전자우편의 계정 유지 등이 지적되었다.

제3자에게 온라인 계정의 이용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제3자’의 권한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는 계정정보 자체의 제공을 거부하는 입장과 ‘제3자’의 권한 제한을 거부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였고, 계정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되 표시나 제한을 하자는 방안으로는 아이디 표기를 이용자와 다르게 하거나 아이디는 그대로 두고 게시글에 표기를 하여 ‘제3자’의 관리를 공시하는 방법, ‘제3자’의 권한범위나 목적, 접속횟수 제한 등이 제기되었다.

둘째, 디지털유산의 관리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로는 ‘민법상의 상속인’이 50.0%로 가장 많았고, ‘민법상의 상속인, 가족보다 넓은 범위’가 32.1%, ‘민법상의 가족’이 17.9% 순이었다. 민법상의 상속인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 응답자들은 주로 디지털유산을 일반 상속재산과 다르게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으며 상속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제3자’의 권한을 증명하기에도 적절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민법상의 가족을 택한 응답자들은 상속인을 택한 응답자들과 달리 디지털유산과 상속재산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다. 디지털유산이 재산의 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하여도 무방하나 그 이외에 정보의 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상속인보다는 이용자의 생활에서의 친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제3자’를 민법상 가족, 상속인보다 넓은 범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역시 이용자와의 관계나 친밀성, 이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사실혼 배우자나 애인, 후순위 상속권자, 친구나 지인, 후견인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법상의 상속인이라고 하여 디지털 유산에 대해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셋째,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로는 ‘이용자의 이해관계’(1순위 92.9%)를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3자’의 이해관계’, ‘사회적 이해관계’ 순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 범주의 이해관계에 대한 응답자들의 상대적 평가에서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지만, 디지털유산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 등과 같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이해관계를 3순위로 응답한 사례에서도 공동창작물로서의 디지털유산의 특징, 사회적 자산의 손실에 대한 우려, 이용자가 공인인 경우 특별한 고려 필요성 등이 지적되어 개별 디지털유산의 성질이나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이해관계가 중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유산의 사후 처리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의 종류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회원가입시 약관에 동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가입 이후에도 언제든지 의사를 설정, 변경,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의사결정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을 염격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주목할 만하다.

사전조치 방법 중 하나로서 에스크로 서비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제도적 지원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데 대해서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응답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기존 법률의 개정 필요성, 사고시 면책 방안, 이용자의 생전 의사와 유족의 의사가 대립할 경우의 지침, 유언으로서의 효력 확보 등의 제안이 있었다.

다섯째, ‘제3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처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사망 이외에 실종, 의식불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의견은 ① 사망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 ②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 ③ 제한적 권한만을 인정하자는 견해, ④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권한 부여를 인

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었다. 실종이나 의식불명은 사망과 유사하지만 사망과 달리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종, 의식불명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섯째,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율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입법으로써 규율하는 방법과 자율규제 영역으로 남겨두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본적 사항만 법에 명시, 세부 필요사항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이 7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법에 명시’가 17.9%,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룸’이 3.6% 순이었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본적 사항을 법령으로 다루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필요사항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법령에서 다루자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사항과 세부 필요사항을 막론하고 모두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다음으로 기본적 사항은 법령에 명시하되 세부 필요사항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하자는 의견은 급속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으로 인한 사업자별 차등 기준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의견은 인터넷정보서비스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본적 사항 및 세부사항을 모두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안으로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적절한 권고안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디지털유산의 범위와 처리 절차 각각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첫 번째로 디지털유산의 범위에 대한 응답을 본다. 응답자들에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가안으로 제시하였던 전자우편 정보,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권리 침해 가능성, 이용자의 생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개인적 카페의 관리권 제한은 경우에 따라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로 제시하였던 계정정보 및 계정이용권, 카페 운영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승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반론이 있었다.

두 번째로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먼저 권한 있는 ‘제3자’가 다수인 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제3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에 대해서,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의 현실적인 문제점, ‘제3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타인의 동의의 불필요성 등이 지적되면서 권한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 순위를 지정하는 방안이나 가족회의 등의 대안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제3자’에 대한 통제 필요성으로서, ‘제3자’의 권한 악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의 관리 여부를 표기할 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권한 조정의 기술적인 한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었다.

이상의 여섯 가지 범주 이외에 앞으로 논의가 더 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고려되지 않은 다양한 디지털유산의 범위와 기록보존의 가치의 차이에 따른 처리의 문제, ‘제3자’의 관리기간을 비롯한 ‘제3자’의 권한의 규제, 외국기업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유산의 처리 문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차등 기준 적용 필요성 등이 제시되어,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과 관련된 논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 제 6 장 결 론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관해서는 디지털유산의 특성과 유형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다. 동 연구에서는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법안들을 대상으로 관련 이해관계를 조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검토해 보았다.

디지털유산의 상속여부에 관해서는 많은 경우 현행 민법상의 상속 규정을 통한 법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상 상속의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은 디지털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디지털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들은 디지털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디지털유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연구와 설문조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출된 디지털유산의 법적 문제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유산 처리에 대한 법제의 필요성 및 고려하여야 할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상의 상속규정이나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디지털유산의 출현이 예상되는 점에서 해석론적 관점을 보완하는 입법론적 접근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입법론적 접근법에서 단기적으로 요구되는 관점은 디지털유산의 관리와 보존에 중점을 둔 사회적 이해관계보다는 디지털유산을 둘러싼 당사자 특히, 이용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또는 디지털유산의 재산적 성격을 고려하여 상속성 판단문제로 접근하는 관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sup>95)</sup>

둘째,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이용자의 이해관계 또는 디지털유산의 재산적 성격에 중점을 두는 관점에서는 논리필연적으로 이용자의 명백한 사전의사를 통하여 디지털유산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 관점은 디지털유산의 처리 절차의 규율방식과 연관이 있으며, 법령을 통하여 디지털유산 처리에 관한 기본적 방향 즉, 입법 및 자율규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기본적 사항(디지털유산의 제공 근거, 디지털유산의 범위,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만을

---

95) 물론 디지털유산의 성질이나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있어 사회적 이해관계에 중점을 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논의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 연구에서는 상론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법령에 규정하고, 기타의 사항(디지털유산의 요청절차와 방법, 정보의 성격에 따른 제공절차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것은 자율적 규제에 위임하는 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

셋째, 디지털유산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서 검토하였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디지털유산의 범위 중 일부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 입법적 해결이 당초 의도했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소 넓은 범위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유산의 제공 대상의 범위이다. 이 문제 또한 이용자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재산적 성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이나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법의 규정과 모순되는 별도의 관리권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있어 사회적 이해관계나 생전에 디지털유산의 생산, 관리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나 후순위 상속권자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경우 민법상 상속규정과 달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 입법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디지털유산의 제공시 제공대상자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유산을 제공받은 대상자가 어떠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역시 디지털유산의 유형과 법적 성질에 따라 달리 논해질 수 있다. 먼저 재산적 성격에 중점을 두는 경우 제공대상자는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승계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권한제한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유산의 유형 중 이용자 의 인격이 발현이 되는 경우(예를 들어, 사자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전송 등) 디지털유산을 제공받은 자가 이를 잡칭하거나 남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극적·방어적 이용에 한정하는 등 이용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기간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섯째, 디지털유산의 처리는 이용자가 가지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한다면, 생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그리고 서비스 이용 중에도 언제든지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를 설정,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관한 입법적 접근에 필요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있어서는 기술적 변화와 해당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들의 특성, 디지털유산의 형성과정, 현행 법제와의 충돌 문제, 사업자의 다양성과 처리 방식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 권한 있는 ‘제3자’의 기술적 능력의 문제 등 디지털유산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디지털유산의 특성에 상응하는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고상룡, 민법총칙(제3판), 법문사(2003).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2002).

권경선, 디지털 유품: 인터넷 계정 및 내용물을 상속되는가?, 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2011).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법문사(1991).

김기중,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2010.10.13.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세미나 자료집).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1993).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2001).

김주수 · 김상용, 친족 · 상속법 -가족법-(2011).

김증한, 민법총칙, 진일사(1978).

박동섭, 친족상속법(3정판), 박영사(2009).

박준서 집필대표, [주석민법] 민법총칙(2), 사법행정학회(2001).

배대현,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V),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

손진화, “가상세계화폐에 관한 규정의 검토”,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가상세계산업진흥법제정방안 세미나 자료집(2010.12.13.).

## 참 고 문 헌

- 안진혁, “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 현황 및 문제점”,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2010.10.13.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세미나 자료집).
- 양재모, “온라인아이템의 물건성과 법률관계”, 법과 정책연구 1집(2001).
-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07).
- 윤주희, “디지털유품의 상속성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4집 제1호(2011).
-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1995).
- 최경진, “물건요건론”, 비교사법(25).
- \_\_\_\_\_, “민법상 정보의 지위”, 산업재산권 15호(2004).
- \_\_\_\_\_,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미래(1998).
- \_\_\_\_\_, 디지털유산의 법적 고찰 - 온라인유산의 상속을 중심으로, 경희법학제46권 제3호(2011).
-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문화사(2003).
- 황용석 외, 사망자의 디지털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10, 2011. 11.)

## 2. 국외문헌

Deven R. Desai, Property, Persona, and Preservation, TJS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1101648, 2008. 3.

Gerry W. Beyer, Estate Planning for Digital Assets, Estate Planning Developments for Texas Professionals, 2011. 4.

James D. Lamm, Digital Property: Planning for Incapacity and Death,  
Presented at the 36th Annual Probate & Trust Law Section Conference, St. Paul, Minnesota, 2010. 6. 7.

John Connor, Digital Life After Death: The Issue of Planning for a Person's Digital Assets After Death, Texas Tech School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11-02.

Lawrence W. Waggoner et al., Family Property Law: Cases and Materials on Wills, Trusts, and Future Interests, 2002.

Michael D. Roy, Beyond the Digital Asset Dilemma: Will Online Services, 24 Quinnipiac Prob. L.J. 376, 2011.

Stewart E. Sterk et al., Estates and Trusts: Cases and Materials, 2011.

高橋秀和/岡村久道, 情報法講義, 法律文化社, 2010.

부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의원 대표발의)

## 【부 록】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00
------------	------

발의연월일 : 2010. 9. 9.

발 의 자 : 김금래 · 김세연 · 고승덕  
권영진 · 박주선 · 심재철  
유재중 · 윤석용 · 이해봉  
임동규 · 전혜숙 · 정해결  
최구식 · 홍영표 · 홍정욱  
의원(15인)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개설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제3자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제2항 신설).
- 다.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 통보를 받은 경우 배우자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제외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신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의원 대표발의)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 ①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배우자 등은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요청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3 (사망자의 통보) ①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4조의 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부 록

### 1. 사망자의 성명

### 2.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자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른”을 “제25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는 경우와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로 통보된 경우

##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신고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의원 대표발의)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95
------------	------

발의연월일 : 2010. 7. 21.

발 의 자 : 박대해 · 유기준 · 현경병

안홍준 · 유재중 · 이성현

김효재 · 이정선 · 정해결

김세연 · 김을동 의원(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개설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사망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이하 “미니홈피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배우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나. 이용자는 자신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등의 경우 본인의 미니홈피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정된 자가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 다. 제25조의2 또는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1조제3호의2 신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의원 대표발의)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 ①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이하 “미니홈피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배우자등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기 쉽게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배우자등은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요청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록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미니홈피등의 관리자 지정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미니홈피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실종 또는 의식이 불명한 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의2 또는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31
------------	------

발의연월일 : 2010. 7. 12.

발 의 자 : 유기준 · 권영진 · 유성엽

김성수 · 손범규 · 이명수

김충환 · 김기현 · 조배숙

김소남 · 김효재 · 이해봉

황영철 · 이성현 · 장윤석

이인기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상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의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는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 부 록

###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그 상속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  
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목록의 통보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9조의2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u></p> <p>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그 상속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목록의 통보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4.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지털유산 처리기준에 관한 권고안

### 1. 취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사망한 경우, 그 회원의 계정에 관한 권리, 그 회원이 남긴 각종 정보 또는 콘텐츠 (이하 계정과 콘텐츠 등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급방법이 불분명하여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속인 등 유족들에게 디지털유산 중 사망한 회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들을 위로하고 회원이 남긴 정보를 정당한 권리자가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공통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 적용범위

- 가. 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서비스 중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제공되는 회원용 서비스에 적용함
- 나. 서비스 이용회원이 디지털유산의 사망 후 처리방법에 관하여 미리 정해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본 처리 기준은 서비스 이용회원이 그 처리방법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함. 본 정책안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회원이 디지털유산의 사망 후 처리방법에 관하여,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함.
- 다. 이용회원의 상속인이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라. 회원의 사망 사실이 그 상속인의 신청과 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3. 본 처리 기준의 효력

- 가. 본 처리 기준은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권고이며, 이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권리로 해석되지 않음.
- 나. 서비스제공자는 본 처리 기준을 수정하여 수용할 수 있음.
- 다. 서비스제공자는 본 처리 기준을 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용해야 하며, 본 처리 기준은 서비스제공자의 수용절차에 의해 그 공지문이나 이용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함.

### 4. 종류별 처리기준

#### 가. 일반원칙

사망자의 계정과 정보 등 디지털유산은 다음과 같은 처리절차를 거친 후 폐쇄하거나 삭제한다.

#### 나. 조회 서비스

서비스제공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존재 여부(사망자의 계정 존부, 해당 계정에 의하여 작성된 게시글 등의 콘텐츠 존부)를 조회하여, 그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다. 발신함과 수신함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우편(이메일)

사망한 사람의 일기나 제3자와 주고받은 편지 등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사망한 회원의 발신함과 수신함에 저장되어 있는

#### 4.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지털유산 처리기준에 관한 권고안

전자우편 정보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적절한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상속인의 요청에 의하여 본 처리 기준에 의한 사후처리를 마친 후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 라. 공개되어 있는 게시물 등의 콘텐츠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게시물 등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 마. 비공개 게시물 등의 콘텐츠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비공개 게시물(일정한 커뮤니티의 구성원 또는 멤버들에게만 공개되어 있는 ‘제한공개 게시물’ 포함) 등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 바. 미니홈피, 개인적인 카페, 블로그, SNS 등 공개된 개인용 웹페이지

위 라, 마항의 원칙에 따르되, 상속인이 개인용 웹페이지의 존치를 요청할 경우, 관리상의 문제나 상속인을 포함하는 제3자가 사망한 회원의 인격을 대신하거나 기타 다른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제공자는 그 존치를 허용하되 고인을 추모하는 용도로만 허용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서비스제공자가 구성한다. 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사. 카페 운영자의 지위 등

카페 운영자의 지위 등에 대한 상속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아. 인적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로그정보, 위치정보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로그정보, 위치정보 등)는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법령과 약관 등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자. 사망한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사망한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상속인에게 이용하도록 할 경우 사망한 회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방법이 없으며 온라인 계정은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비스제공자는, 앞에서 제시한 처리방안에 갈음하여, 적절한 기간이 정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이 사후처리를 마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사망자의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차. 사망한 회원의 이용자 지위(계정이용권)

사망한 회원의 계정이용권 자체는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항의 처리원칙과 같이 서비스제공자는, 앞에서 제시한 처리방안에 갈음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이 사후처리를 마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사망자의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 4.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지털유산 처리기준에 관한 권고안

##### 카. 사이버 머니, 포인트 등 경제적 이용가치가 있는 이용권

본 처리기준은 사이버 머니, 포인트 등 경제적 이용가치가 있는 이용권 등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처리절차

- 가. 상속인은 서비스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단독신청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 다. 상속인은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망한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라. 서비스제공자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만을 부여하거나 백업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 마. 서비스제공자는 상속인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에 계정 소유주의 사망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출처: 황용석 외, 사망자의 디지털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10), 2011. 11, 161-164면)

## 5.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	--

### 디지털 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번에 디지털 유산에 관하여 현재 법제도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향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제도개선 및 보완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오니, 가급적이면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 11

연구책임자 :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최경진 (경원대학교 법학과)

조영기 (한국법제연구원)

조사담당자 :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응답자 일반사항

다음은 자료분류를 위한 확인사항입니다. 각 사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1] 연령대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R2] IT관련 법제도 관련업무 종사기간	_____년 _____개월

본 설문은 온라인상의 디지털 유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주의깊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의 이용 확산으로 온라인상에 저장하는 정보의 양이 급등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상의 디지털 유산으로는 인터넷상의 저작물·상표·디자인, 인터넷상의 게시물, 댓글 및 동영상,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도메인명, 계정, 아이템, 아바타, 가상화폐 등의 전자적 지급결제 수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사망한 연예인의 유족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사자(死者)의 계정정보(ID, 비밀번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된 사례, 암묵적으로 제3자가 사자의 미니홈피 등을 관리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라크에서 전사한 해병대원의 부친이 이메일 계정 접근권을 야후에 요구하였다가 거부된 뒤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메일 내용을 CD 및 인쇄물로 제공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을 참조하시어 다음의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디지털 유산의 범위]

1. 이용자의 사망 후 남겨진 디지털 유산에 관한 처리방법은 크게 2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산의 처리나 관리권한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제3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계정정보(ID, 비밀번호 등) 자체를 넘겨주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1. 첫 번째 경우와 같이 ‘제3자’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나 관리권한을 요청할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자우편의 내용
    - ② 비밀 글 등 비공개 게시물의 내용
    - ③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관리권
    - ④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및 보호조치
  - 1-2. 위의 선택지 이외에 ‘제3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산에 관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3.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사자(死者)의 ID,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본인의 권한에 비하여 제한적인 이용권만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계정정보를 활용하여 마치 이용자인 것처럼 메일이나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추모, 기록의 보관 및 삭제 등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한의 제한은 어떠한 범위 또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사후 디지털 유산의 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2. 사후 디지털 유산의 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어디 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및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을 참조하여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예시1	이용자의 민법상 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li> <li>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li> <li>2. 피상속인의 배우자</li> </ul>
예시2	이용자의 민법상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li> <li>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li> <li>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li> </ul>

예시3	이용자의 민법상 가족 · 상속인보다 넓은 범위	* 가족, 상속인 외의 ‘제3자’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습니다. 1. 후견인 2.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	------------------------------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제3자’의 범위는 다음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① 민법상의 상속인
- ② 민법상의 가족
- ③ 민법상의 가족 · 상속인보다 넓은 범위

**2-1.** [① 또는 ②를 선택한 경우] 민법상의 가족 · 상속인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2-2.** [③을 선택한 경우] 민법상의 가족 · 상속인 외에 누가 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디지털 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이해관계

3. 디지털 유산의 법적 취급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시어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종 류	예 시
① 이용자의 이해관계	자기정보결정권, 개인정보 보호 등
② ‘제3자’의 이해관계 (가족이나 상속인 등 이용자의 사망 후 권리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를 말함)	상속, 경제적 이해, 사망자에 대한 추모 등
③ 사회적 이해관계	역사적 · 사회적 · 문화적 가치의 보존, 미래의 집단적 창의성을 위한 토대의 보존, 인터넷 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

3-1.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해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나열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용자의 이해관계

② ‘제3자’의 이해관계

③ 사회적 이해관계

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2. 위의 이해관계들 중 이용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는 상속, 개인정보보호 등 개인적 차원에 주요한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디지털 사회에서 문화적 측면이나 역사적 측면 등과 같은 ‘사회적 이해관계’ 또한 중시하여야 한다

## 5.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

---

---

---

### 이용자의 사전조치의 종류

4. 디지털 유산 처리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용자가 생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이겠으나, 그 방법이 문제됩니다. 이용자의 사전조치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4-1.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의사결정을 생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4-2.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사전조치 방법 중 하나로서, 사후 온라인 정보 접근권한 등의 정보를 임차해놓을 수 있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의 제도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활용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사례:** 미국의 Entrustet은 이용자가 온라인상에 저장해둔 자료, 전자우편, 금융자산 등을 사후에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누구에게 전자우편 계정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하여 계정 정보를 위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 록

이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제3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처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제3자’가 디지털 유산의 관리권한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실종 또는 의식불명시에도 이용자가 부재하게 되어 디지털 유산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관리자를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해 두었다면, 이용자의 실종 또는 의식불명시에도 ‘제3자’가 디지털 유산의 관리권한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 
- 

### 디지털 유산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율 방식

-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있어,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사업자의 자율규제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p><b>[예시1]</b> 기본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법에 명시</p>	<p><b>1. 기본적 사항: 법에 명시</b> 디지털 유산의 범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디지털 유산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법률로써 정함.</p> <p><b>2. 세부 필요사항: 법에 명시</b> 디지털 유산의 제공에 관한 ‘제3자’의 요청절차와 방법, 관리 범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 유산 제공에 필요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p>
<p><b>[예시2]</b> 기본사항만 법에 명시, 세부 필요사항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p>	<p><b>1. 기본적 사항: 법에 명시</b> 디지털 유산의 정의,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디지털 유산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 기본적 사항만을 법률로써 정함.</p> <p><b>2. 세부 필요사항: 자율규제영역으로 위임</b> 디지털 유산의 제공에 관한 ‘제3자’의 요청절차와 방법,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의 범위, 정보의 성격에 따른 제공절차 및 제공방법, 디지털 유산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여부 등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약관으로 정하도록 함.</p>
<p><b>[예시3]</b>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름</p>	<p><b>1.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 자율규제영역에서 다름</b> 디지털 유산의 정의,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디지털 유산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디지털 유산의 제공에 관한 ‘제3자’의 요청절차와 방법,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의 범위, 정보의 성격에 따른 제공절차 및 제공방법, 디지털 유산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여부 등을 모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약관으로 정하도록 함.</p>

자율규제 영역을 넓히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약관이나 자율적 규제로써 처리방법을 정할 여지가 넓어지고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수월해집니다. 반면 규제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이 무의미해질 수 있고,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규율

## 부 록

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입법으로써 규율하는 영역을 넓히되 절차나 방법 등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유산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율하는 방식의 기본적 방향으로, 다음 중 어떠한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법에 명시
  - ② 기본적 사항만 법에 명시, 세부 필요사항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위임
  - ③ 기본적 사항 및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룸
- 6-1. 응답하신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6-2. 선택하신 방식의 경우 추가로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7.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자율규제에 맡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 이하에서 ‘제3자’란 이용자의 가족, 상속인 등 이용자의 사망 후 디지털 유산의 관리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 1.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 ○ 조회 서비스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유산의 존재 여부(사망자의 계정 존부, 게시글 등의 컨텐츠 존부 등)를 조회하여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 전자우편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적절한 기간 경과 후 또는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후처리를 마친 후 계정을 폐쇄할 수 있음.

#### ○ 공개 · 비공개 게시물 등 컨텐츠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해당 컨텐츠를 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음. 구체적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따로 정함.

#### ○ 미니홈피, 개인적 카페, 블로그, SNS 등 공개된 개인용 웹페이지

고인을 추모하는 용도로만 존치를 허용.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구성.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2.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 ○ 사망한 회원의 계정정보: 적절한 기간 내에 ‘제3자’의 접속만을 허용. 기간을 경과하고 사후처리를 마친 후 계정을 폐쇄할 수 있음.

#### ○ 사망한 회원의 계정이용권: 적절한 기간 내에 ‘제3자’의 접속을 허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계정을 폐쇄할 수 있음.

#### ○ 카페 운영자의 지위 등

#### ○ 인적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로그정보, 위치정보 등): 관련 법령, 약관 등에 정해진 기준,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음.

7-1. 위와 같은 디지털 유산의 범위에 대한 자율규제 권장 방식에 미흡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디지털 유산 처리 절차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 이하에서 ‘제3자’란 이용자의 가족, 상속인 등 이용자의 사망 후 디지털 유산의 관리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 1. ‘제3자’의 신청

- 디지털 유산의 관리권한을 요청하는 ‘제3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권한 있는 ‘제3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고,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권한있는 ‘제3자’의 동의서류를 받아야 한다.

#### 2. 정보의 성격에 따른 제공절차 및 제공방법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권한만을 부여하거나 백업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 3. ‘제3자’의 권한범위 및 사망 사실의 표기

- ‘제3자’는 사망한 회원이 작성한 컨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컨텐츠에 계정 소유 주의 사망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8-1. 위와 같은 디지털 유산 처리 절차의 자율규제 권장 방식에 미흡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5.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

---

9.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앞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 혹은 논의되었으나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